

7. Vol. 1. #6

7. Vol. 1. #6

7.1. 편집자의 변 242

7.2. SING is ACTing! 243

7.3. Article5 244

7.3.1. 빅브라더의 세계 최초 출현 244

7.3.2. 통신검열의 비민주성에 대하여 246

7.3.3. Copyright.. 저작권의 궁극적 목적으로 돌아가자! 248

7.3.4. 'Magazing'에서 'WebZing'으로 250

7.4. 정보통신포럼 253

7.5. 통신인 귀속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299

7.1. 편집자의 변

안녕하십니까? 정보연대 SING 간사로 있는 편집자 박인성입니다. 지난 7월 10일 Vol.1 #5 호 이후 약 5달만에 뵙게 되는군요. 반갑습니다. 5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호 이후 SING A SONG은 쌍방향적인 웹진(Web Magazine)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WebZine 형태의 SING A SONG은 그 창간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크게 사과드립니다.

그러한 결론이 있는 뒤 정보연대는 다시 기존의 SING A SONG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많은 독자들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는 일종의 뿌듯함, 그리고 독자들에게 대한 감사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 5개월 만에 SING A SONG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5개월에 기간동안 정보연대는 많은 사업들을 벌여 내었습니다. 청년학생한마당, 맥브라이드 라운드테이블 참가는 물론 뜻깊은 제 1 회 전국 대학생 정보운동 포럼 개최 등 많은 토론의 공간들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통신검열'에 대해 여타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성과로 전자주민카드의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의식을 불러 일으켰으며, 통신검열에 경우 '통신검열백서'를 발간하는 의미있는 사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SING과 함께 해온 많은 분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정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의 자리에도 꾸준히 참여하였습니다. 이전부터 계속되던 통신연대의 월례포럼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였고, 새로이 기획된 지식연대의 정보통신토론회에도 참가, 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실어오던 통신연대 월례포럼 발제문과 정리문은 편집상의 사정으로 이번 호에 실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대신 지식연대 정보통신토론회 발제문 모두를 실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급된 활동들에 대한 내용 및 자료는 정보연대 SING 홈페이지(<http://www.sing-kr.org>)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연대가 태어난지 이제 2년쯤, 정보운동이라는 화두로 정보연대는 나름의 지위와 그에 걸맞는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보연대의 SING A SONG은 그 자체로 정보운동의 장이 될 것이며, 활동가 그룹이라는 모토에 걸맞는 활동을 촉구하는 여러분의 매체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대략의 내용에 대한 소개는 글 서두에 있는 <편집자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밑의 광고>를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는 Vol.2 의 첫호로서 새로운 편집자님이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많은 편집상의 미숙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광고 : 사무실 이전 및 도메인 네임 변경

정보연대 SING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기존의 상도동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신림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1동 1578-3 우성빌딩 5층

전화번호 : 02-855-1913

찾아 오시는 법 : 지하철 2호선 신림역 하차후 4번 출구로 나오셔서 계속 직진하시면 신생병원이 있고 그 다음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5층 건물이 우성빌딩 기존의 cybercom.co.kr 도메인 네임이 sing-kr.org로 변경됩니다.

더이상 cybercom.co.kr 도메인네임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링크 등을 변경하시어 사용상의 불편이 없길 바랍니다. 대강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SING 홈페이지 : <http://sing.cybercom.co.kr> ---> <http://www.sing-kr.org>

KPD 및 그 이하의 홈페이지 : <http://kpd.cybercom.co.kr> ---> <http://kpd.sing-kr.org>

회원 계정 서버 : romantic.cybercom.co.kr ---> member.sing-kr.org

SING BBS : <telnet://bbs.cybercom.co.kr> ---> <telnet://bbs.sing-kr.org>

SING Mailing List : sing@mail.cybercom.co.kr ---> sing@mail.sing-kr.org

7.2. SING is ACTing!

정보연대 SING 의 이야기인 SING A SONG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SING A SONG 을 내지 못한 점, 보다 인간다운 정보화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정보연대 SING 은 이제 만으로 2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길지 않았던 시간 만큼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아볼만한 세상을 위해서!

보다 인간적인 정보화사회를 위해서!

소외된 자들의 해방과 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위해서!

SING 은 2년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SING 은 1997년에는 보다 왕성한 활동과, 젊은이들의 패기와,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Web 중심의 Media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일반적인 네트워크사용자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텍스트에 기반한 Media 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정보화 논의는 486이상과 메모리용량을 16메가 이상을 요구하는 컴퓨터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기능은 이제 옵션이 아니고 필수품이 되었으며, 멀티미디어가 지원되는 Internet이 유일한 공간인양 자본과 권력은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여전히 텍스트에 기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도 역시 텍스트에 기반한 Internet 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정보를 Internet 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Internet 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고,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를 위해서 SING 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움직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7.3. Articles⁵⁹⁾

7.3.1. 빅브라더의 세계 최초 출현 : 전자주민카드 실시 저지를 위하여 (김지호(firehawk@member.sing-kr.org))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제도인 주민등록제도⁶⁰⁾는, 50년대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관리할 목적의 시민증, 도민증 제도를 전국민에 확산할 목적으로 62년 5월 주민등록법을 마련하여 6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미 온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성인이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용도로 주민등록증을 쓰기 때문에 이를 당연시 해 오고 있어서, 정부가 98년부터 전국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전자주민카드⁶¹⁾ 계획에도 누구나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외국의 프라이버시 단체들과 연계를 가졌던 유학생 김주환씨가 '맥브라이드 국제 라운드 테이블⁶²⁾' 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 전자주민카드?

정부는 98년 17세 이상의 모든 남여에 대해 개인 IC카드를 발급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실시하려 한다. 내무부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검찰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시행이 예고된 이 제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주어지지 않은 한국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래에서는 정부에서 밝힌 전자주민카드의 추진 계획과 진행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 전자주민등록증의 문제점 개선과 각종 증명의 통합 필요성 및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다기능 신분증을 제작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전자주민카드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의 7개항목과 그에 들어가는 41개 분야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97년에 1억 9천만건의 자료 구축/ 온라인망 구축/ 관련제도 정비와, 98년 시도별 세대별로 17

59. SING A SONG Vol.1 #5 에서 이번 호 사이에 정보연대 SING이 기고한 글들을 접해 볼 기회가 없던 많은 분들을 위해 모아 보았습니다. 출처는 각각의 글들 앞에 밝혀 놓았으며, 그동안 나온 기고글 모두를 데이터의 손실 관계로 실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문의 내용은 시간상의 차이로 현재에 있어 다소 부적절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60. 내무부 스스로 주민등록증은 세계 유일의 제도라고 자랑(?)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Universal Numbering System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선진국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시민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발로 시행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이 17세만 되면 의무적으로 10 손가락의 지문(이것은 외국에서는 범죄자와 외국인에게만 받는 것이다)을 찍고 번호를 부여받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이다. 호주에서 ID카드(신원확인카드;물론 지문은 들어가지 않는 계획이었다)를 시행하려다 실패했을 때 나왔던 시민들의 우려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민등록제도를 얼마나 당연시 했는지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권위있는 어른들에게 ID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순수하게 자발적'라 믿는 것은 과연 현실적인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극장에 가기 위해, 술을 마시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성인이 되어서 그들은 ID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의 일상적인 측면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http://www.privacy.org/pi/activities/identity/campaigns.html> 라는 ID카드 반대 캠페인의 과정을 담은 문서 中, 강조는 필자) 당신은 이런 우려를 해본적이 있는가?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까? 외국의 경우엔 사회보장 번호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 처럼 17세가 되면 전국민이 지문을 날인하고 의무적으로 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기에 자신의 주소나 본적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61. 외국에서는 전자주민카드가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에수준인 ID카드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후진국들에게는 그러한 카드를 시행할 기술이나 돈이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정보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에서는 그러한 카드를 시행하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민의식과 제도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맥브라이드회의 발제문 中)

62.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술 회의였던 것이 학술 세션과 NGO(NonGovernmentOrganization)세션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했으며, 올해에는 서울에서 8월 24일부터 3일간 열렸다.

세이상 3천4백만 국민에 대해 발급시작해서, 99년 전국에 걸쳐 실시하여 발급을 완료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중단한다. 공공기관의 증명서 발급에 따른 비용이 전자주민카드실시로 경감되며 그에 따른 행정효율화와 공무원의 감축으로 비용절감효과는 1천억에 달한다. 또 멀리 본적지나 동사무소에 갈 필요없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등을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개인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 컴퓨터나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며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이 없어 신분확인하고 증명하는데에 주민등록증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를 감축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이지 감시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분실시는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나 보안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크래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기부와 국가안보센터와 협의하여 침입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 프라이버시와 네트워크

위에서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았다. 이것만을 보면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면, 엄청난 행정의 효율화와 국민들의 편의, 그리고 범죄 예방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만이 아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⁶³⁾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없는 듯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하면 떠오르는 것은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뭔가 멋멋하지 못한 사생활 등이다. 그러나 "멋멋한 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과 기본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 프라이버시권이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규정도 되지않고 인식도 없는 상태기에 외국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프라이버시권은 보통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며 "국가기관을 포함한 제 3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개개인이 열람과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을 도입하였던 고 샘 어빈 상원의원은,

정부가 개개의 국민에 대해 알 수 있는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정부에 양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나 다른 어떤 기관이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들이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더욱 커진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한 권리 장전은 허튼 소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EC가입국 12개국이나 우리나라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OECD 등의 경우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보파일에는 절대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보주체인 개인이 알고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하며,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한다. 셋째,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확실하고도 의식적인 동의(예컨대 서면동의)가 있어야한다. 넷째, 정보주체는 자신이 공여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한다. 다섯째, 정보수집이전에 그에 관한 적절한 법률적 규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 여섯째, 정보주체는 언제나라도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어야하며, 그 내용을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등이다. 그리고 한 전문가는 " 개인정보는 흩어져 있을수록 보호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정리해보면,자기정보통제권, 접근권의 보장과 국가를 포함한 제3자의 정보수집시의 고지의 의무와 데이터 주체의 동의 등이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주민등록증제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 된다. 국민들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강제 등록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벌어진 사태는 이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⁶⁴⁾. 여기서는 주민등록제도 자체까지 나아가기 보다는 전자주민카드로 집중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 개인정보의 네트워크화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실시를 위해 중앙 데이터베이스센터를 마련하고 동사무소,병원,학교,의료보험공단,경찰청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한다. 이는 유출의 위험성이 몇몇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일단 대량의 정보가 네트워크를 흘러다닐 것이고, 단일망(의료보험공단내, 연금공단내의 망 등)일때보다 허술한 곳이 증가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자⁶⁵⁾가 증가할 것이기에 첫째는 크래킹⁶⁶⁾의 위험성

63.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헌법에 프라이버시권이 명시된 나라(이집트, 우리나라등 세계에서 5개국 미만이라 한다)들이 오히려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하위법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식도도 높다는 것이다.

64. 최근 한국의 한 여성이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해왔다. 망명의 이유는 이혼한 남편이 자신을 계속 쫓아온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의 흔적 때문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어디로 이사를 가든 쫓아올 것이기에 결국은 망명의 길로 내몰린 것이다.이 사실은 제 3국 정부에서 도대체 '주민등록제도'가 뭐길래 이 여성이 망명을 하려 하느냐고 되물어와서 밝혀졌다 하니, 이것이 웃고 넘어가야 할 일인가?

65. 카드에는 비밀번호가 부여될 예정인데, 이것을 잊어버렸을 경우의 대비책을 실무자는 갖고 있을 것이고, 이런 실무자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이 들에는 내부자 공모에 의한 유출⁶⁷⁾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정보가 상품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 이다⁶⁸⁾. 이러한 이유들로 93년 미국 프라이버시보호법이 개정되었을때의 핵심내용은 개인정보의 네트워크화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 마지막

이미 시작된 전세계 감시망 체계 구축의 일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경우의 감시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이것은 국가 보 안사항이기에 1급기밀 지역이 될 것이고, 안기부, 국방부 등 공간기관이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⁶⁹⁾

지금은 7가지만 들어가지만 여기에 신용카드, 전철패스, 버스카드 등만포함된다면, 이걸 완전한 빅브라더의 탄생이다. 그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서 무얼타고 어디에 갔고, 무얼 샀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다. 한 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거기에 다른 정보들을 집어넣 는 것은 식은죽 먹기이기 때문에 처음의 이 개인별 데이터베이스구축이 무서운 것이다.

더욱 무서운 점은 현재 유엔의 일부기구에서 준비하고 유수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세계 미래 공중육상이동통신망(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계획의 일환인, 50억인구에게 부여한다는 15자리 번호를 전자주민카드에 넣는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 우 840개의 저레도인공위성을 띄우고, 그것을 통해 개인별 번호를 추적하여 개인휴대폰, CT2, 삐삐, 인터넷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것이 시행될 경우, 우리의 움직임은 그대로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 어디에 있는 그들은 우리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망명을 하고 싶어도 망명할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다.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7.3.2. 통신검열의 비민주성에 대하여⁷⁰⁾ (김지호)

최근들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통신공간 일반이나 통신간에서의 토론 내용이 인용되는 것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200만 정도밖에 안되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통신공간을 언론이 정보화사회라는 장미빛 설교 도구로 이용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대중들의 여론 창구가 거의 유일하게 통신공간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정리된 형태로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는 언론이 이미 그들에게 멀어진 상태에서, 통신 공간은 대중들에게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제출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통신공간이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안기부장의 발언은, 정부가 통신공간의 자유로운 발언과 비판에 대 해서 저조기 두려워하고 있으며 통신공간에 대한 그들의 검열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이미 이루어져 왔던 정부의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통신공간이 어떠한 가능성을 갖는지 살펴보자.

■ 대표적 통신 검열의 사례

통신에서 검열 받지 않고 글이 보존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우선 글쓰는 이 자신의 검열을 거쳐야 하며, 동호회 사십, 그다음은 통신 서비스회사(하이텔, 천리안, 나무누리 등)의 검열, 그 다음은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검열, 공간기관의 검열 등을 거쳐야 한

증가한다.

66. 해킹과 크래킹은 구분해야 한다. 해킹이란 컴퓨터를 열심히하여 컴퓨터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크래킹은 컴퓨터를 이한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현재의 국내의 암호화 기술 수준은 크래킹의 가능성을 훨씬 신빙성이 있게 한다. 제 2차 세계대전때부터 암호화를 연구한 미국의 기술과 정보화를 얘기한지 5년도 채 안된 우리의 기술 수준의 차이는 뻔하지 않은가? 발달한 기술이 크래킹 쪽에 있을 가능성은 인터넷의 발달로 한층 증가하고 있다.

67. 우리 같은 비리사회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기재사항을 외부에 유출시키다가 적발된 예는 수도없이 많다. 백화점의 고객리스트를 빼돌려서 범행을 했던 지존파의 예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기술적인 침투는 막더라도 이런 공모들을 막을 수 있을까?

68. 연금증서에는 개인의 자산정도가 들어가고, 의료보험증에는 개인병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훌륭한 상품이 된다.

69. 최근의 이야기 73사건은 일반인들이 모르게 사적정보를 수집하는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프로그램 인스톨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써 넣게 한 뒤, 통신에 접속했을 때, 사용자가 모르게 그 정보들을 빼내갔던 것이다. 하물며 한 회사가 이정도인데, 안기부 등에서 어떤 방법을 쓸지는 그들만이 아는 것 아니겠는가?

70. 서울대학원신문 기고글입니다.

다. 이러한 여러 검열에서 살아남은 글만이 통신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 사업법, 정보통신 윤리강령, 청소년 보호법, 선거법, 국가보안법 등 통신검열에 이용되는 법만도 상당하다. 여기서는 정부의 대표적 통신 검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칼날이 처음 통신공간에 드리워진 것은 93년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 사건이다. 당시 현대철학동호회에 올려진 '사노맹 중앙위의 입장'이라는 글을 문제삼아 당시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현대철학동호회는 지금까지의 모든 회장들의 구속 을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문제삼은 글들이 이미 출판된 책에서 발췌한 것이었거나 신문등의 기사를 발췌한 것이라는 점은 여타의 미디어와 통신공간을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른 동호회의 글을 인용한 것만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는데, 이는 통신상의 그 수 많은 글들을 통제하지 못하기에 현대철학동호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드러낸다.

다음으로 94년의 한국통신 노동조합 CUG(Closed User Group: 일정한 회원규정을 가져야만 접근 가능한 그룹)폐쇄 사건이 있다. 한국통신노동 조합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을때, 위원장의 지침의 전달, 정부에 대한 비판의 이유를 들어 하이텔 자체적으로 폐쇄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각 통신서비스 회사 마다 있는 사용자 약관중의 사회혼란 조장 규정의 위배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 각 통신서비스 업체는 자신들의 사용자 약관이 있는데, 이것은 이용자와의 협의하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내용이 사회혼란 조장, 풍기문란 조장, 계층간 위화감조성, 회사에 위해를 입힐때 등 검열 기준이 애매하여 그 자의성이 심히 우려할 만하다. 다음으로는 올 8월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총련 사태의 후미를 장식 했던, 한총련 CUG폐쇄 사건이다. 판사의 폐쇄 영장을 가지고 검열에서 진행한 이 사건은 통신상의 규제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라 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CUG폐쇄에 관한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CUG전체가 이적성이 있는 글이 아님 에도 폐쇄를 단행해 나머지 성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점, 전화가 이적행위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전화사용권을 박탈할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증거자료의 수집은 폐쇄가 아니라도 가능한데 폐쇄를 단행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현재 영 장에 대한 준항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BBS(Bulletin Board System: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텔 등은 상업BBS이다.)로 유명한 KIDS B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건에 대해 소개할까 한다. KIDS BBS는 만들어진 이래로(80년대말에 만들어졌으며, 비상업 BBS이다.) ID의 실명확인 없이 가입가능하며, 어떤 글도 삭제된 적이 없던 가입자 6000에 이르는 BBS이다. 그러나 최근한총련 사태의 여파로 이를 운영하던 한국통신 측에서 압력을 가해 한총련 관련글을 마구 삭제하며, 무기명 보드(글쓴이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게시판)를 폐쇄하고, 가입자들에게 실명을 요구하며 불응시 아이디를 삭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는 사용자들이 다른 곳으로 KIDS를 옮기려 하자 게시물에 대한 소유권 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KIDS BBS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실명을 누구에게 확인 받지 않고서도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통신문화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로 꼽히던 BBS였다.

■ 통신의 특성과 검열의 비민주성

통신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다.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우리 국민은 아직 국가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개인의 자치능력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에 익숙치 못하다. 우리 국민에게 개인들의 의견이 맞부딪치는 토론은 낯설은 것이어서 말싸움으로 여기기 일쑤이며 뭔가 하나로 통일된 의견을 따르며 전체적인 무언가에만 익숙해왔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의식이 전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통신공 간은 이러한 훈련을 가능케하는 훌륭한 민주주의 훈련의 공간이다. 자신의 ID를 가지고 반박과 토론속에서 자신을 느끼며, 상대방을 인정하며 그렇게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것이다. 또한 통신은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인 시공간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바라보게 하 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단순히 투표를 전자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아니라, 시공간의 한계에 구애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논의들이 존재하는 장, 이것을 물리적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써 통신은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검열은 민 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작태일 따름이다.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항상 하나의 견해를 강요하기 위해 누군가가 써오던 입막음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통신공간에서 싹트는 민주주의의 씨앗을 밟아버리는 검열을 저들은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청소년'이다. 청소년은 그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청소년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먹거리며, 검열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우므로 막아야 한다며 통 신 공간에 진을 틀고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검열을 자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심지어는 청소년에게는 너무 난해하다는 이유로 성인들도 이 용하는 게시판에 있는 글을 삭제하기까지 한다. 두번째는 이것이 만연하다 보니 온 국민을 '청소년 취급'해 버리는 것이다. 이를 테면 선동죄 가 대표적인데, 누가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선동이라고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주장에 대해서 '청소년들' 처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신 판단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모 나라의 경우, 선동은 영화관에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야' 를 외치는 경우처럼 사람들의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지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 공간은 특히 자정작용이 뛰어나다. 누구나 반론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검열할시에 오히려 반론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 는 것이다. 검열이 아니라 통신인의 자정작용에 맡기는 정부의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검열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통신상에서의 검열 또한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깊은 연관 이 있다. 통신상에서의 검열 철폐 운동을 하면서 필자가 느낀 어려움은 바로 사회의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는한, 어느 한곳에서만 자율은 주 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래에 대한 검열, 만화에 대한 검열, 영화에 대한 검열, 정보통신 상에서의 검열 등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검열에 대한 철폐의 목소리들이 높아져 검열이 사라질 때, 실질적 민주주의는 한발 앞으로 오리라 믿는다.

7.3.3. Copyleft.. - 저작권의 궁극적 목적으로 돌아가자!⁷¹⁾ (박인성)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황금률(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 성서)이라고 생각한다.' - Richard Stallman.

■ 들어가며.

저기 한 웹디자이너가 있다. 그의 작업은 주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텍스트를 효율적이고 미적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들이다. 그는 적절한 이미지들을 그려서 편집해 낸다. 조그마한 아이콘이나 볼, 바 등은 인터넷상의 공개된 자료들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이미지와 텍스트들이 결정되고 나면 그는 이런 것들을 배치하기 위해 HTML문서 편집에 들어간다. 이런 그의 모든 작업들은 한 귀퉁이에 웹브라우저를 띄워놓은 채 진행된다. 그는 수시로 이곳저곳의 웹페이지들을 돌아다니면서 브라우저의 View-Document Source 명령을 이용, 자신이 만들 페이지의 본(Edit-Copy, Edit-Paste의 연속)으로 삼는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인터넷의 수많은 이미지, 그리고 HTML Source 밑에서 이런 살벌한 문구를 만나게 된다. 'Copyright. 무단으로 복제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두운 골방으로 내몰려 그만의 외로운 작업에 들어간다. 몇년후 그가 밝은 세상에 나왔을 때 그가 만든 페이지에는 단 몇줄의 글만이 있었다. "이 페이지안의 모든 것들은 Copyleft됩니다. 자유로운 복제, 수정,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들 골방으로 쫓은 'Copyright' 그리고 그가 다시 나왔을 때 밝은 한마디 'Copyleft'는 과연 무엇인가?

■ Copyright VS. Copyleft.

- Copyright?

흔히들 저작권이라고 하는 Copyright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살벌한 경고문구! 저작권의 원래의 취지는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장려하여, 공공의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가? Copyright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등장하는 그 살벌한 경고 문구나, 혹은 우리들의 자유로운 프로그램사용 - 버그가 있을 시 수정하고, 그것을 다시 복사, 배포하는 - 을 방해하는 배타적 권리 그 이상은 아니다. 그리고 더욱 모순적인 것은 그러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자는 그 프로그램을 손수 짠 프로그래머 그 자신이 아닌, 그 프로그래머를 고용한 '돈'이라는 점이다. 이제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공공의 이익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저작권 'Copyleft'를 주장한다.

- Copyleft?

Copyleft를 최초로 제안한 GNU(GNU is Not Unix! - <http://www.gnu.org>)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opyleft는 모든 사람이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그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프로그램의 복사본과 함께 얻을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적인 방법이다. (즉 그들은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러한 자유를 빼앗는 데 저작권을 사용한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유자들은 Copyleft를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Copyleft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Copyleft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GNU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Copyleft는 Copyright Notice와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Copyleft안에 있는 Copyright Notice는 Copyleft된 프로그램을 누군가 약간 수정하여 현행의 저작권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Copyright Notice는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한다는 원래의 저작권법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며, 이는 곧 Copyleft가 단순한 불법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여기서 GPL은 프로그램의 배포, 수정의 자유를 규정하는 문서이다. 최근에는 GPL의 확장된 개념인 LGP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Copyleft된 프로그램을 Copylefted Software라고 하는데 이는 Free Software 의 한 종류이다.>완전 Free Software는 소스코드의 수정, 배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Free'는 '공짜(in zero price)'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Freedom)'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흔히 알고 있는 'shareware'와는 다른 것이다.'. Shareware'는 우선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수정의 자유가 없으며, 등록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복사와 분배가 허용되기 때문이다.(자세한 GNU의 소프트웨어 분류는 <http://www.gnu.org/philosophy/categories.html> 참조)

71. I-Net의 WebZine lm@ge(이미지) 11월호에 기고한 글이며, <http://www.iworld.net/1m@ge9611/html/1m-issue21.html>에서 Web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래머와 Copyleft.

프로그래머는 물론 프로그래밍이라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란 사회적 공헌을 말한다. 또한 창의성이란 그 결과물을 사회가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공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그의 창의성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프로그래머의 창의적 노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상은 이러한 의미에서 유해하며, 이는 인간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풍요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GNU 선언문(<http://romantic.cybercom.co.kr/~mazda/gnu.txt>) 중 일부 인용) 그러나, 그를 위해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기업체에 속해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 저작권을 넘겨주는 대신 월급을 받는 것이 그들에 대한 보상의 유일한 수단인가?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에 대해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그것이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한 것에 대한 대가 - 저작권의 원래 보호 대상인 저작자 자신의 창조적 노동이 아닌 - 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완전한 Copyleft시스템은 프로그래머들 자신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프로그래머들의 이상에도 보다 접근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프로그래머가 바라보는 Copyleft'에 대한 재미있는 글(<http://romantic.cybercom.co.kr/~mazda/prog-CL.html>)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GNU에 의해 제시된 구체적 보상의 방법의 좋은 예는 바로 FSF(Free Software Foundation - <http://www.fsf.org>)이다. FSF는 여러 기업들, 사용자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프로그래머들에게 보상을 하는 재단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은 Copylefted Free Software가 된다. GNU프로젝트는 이를 확장시켜 소프트웨어의 실제 사용자인 컴퓨터 유저들은 그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마다 '프로그램 세(稅)'를 지불하고 이를 Copyleft된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유저가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단, 어느 소프트웨어에 지불하느냐는 유저가 결정할 수 있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래머는 사회적 이익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는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Copyleft의 확장 - 'Being Digital' and 'Copyleft'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아마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장 Copy가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네 그로폰테가 그의 저서 'Being Digital (<http://www.randomhouse.com/knopf/digital.html>)'에서 지적하다시피 모든 저작물들이 Digital화 되어가는 - 다시 말해, Copy가 가능하며, 또한 그 원본과 사본이 다르지 않은 - 지금 저작권의 문제는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발달된 Digital 기술에 의해 많은 정보는 그 가치의 손실없이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저작권이라는 것의 궁극적 목적이 '공공의 일반적 이익의 증진'이라면 Digital화는 선용하기만 한다면 이런 목적에 더욱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Copyleft가 결코 불법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저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때, Copyleft는 모든 저작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Copyleft의 개념은 여러 저작물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책을 Digitize화한 OBI(Online Book Initiate와 그 범위를 회화, 음악으로까지 확장한 Project가 있는 데 이들의 목적은 발달된 Digital 기술을 이용하여 지식의 광범위한 접근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Copyleft에 대해 연구하면서 읽어본 유럽의 대학생의 논문 끝에서도 'Copyleft by'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대학생은 자신의 논문이 더 훌륭한 논문의 밑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고 있었다. 많은 저작물의 영역에 있어 Copyleft는 이렇게 실현되고 있으며, 그들의 한결같은 목적이, 또한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한 '공공의 일반적 이익의 증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Copyleft는 모든 저작물 영역에 고루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닫으며

'내가 좀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의 한마디를 떠올려 본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전의 '새롭지 않은 지식'들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독창적인 지식'이란 이름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Copyleft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넷이 지금의 위치까지 온 것은 '정보의 공유'가 이상인 Copyleft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다. 인터넷의 대부분의 기술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이들의 공헌이며, 이것은 지금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글의 첫머리에서 밝힌 한 웹디자이너의 이야기는 어쩌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WWW의 발전은 어쩌면 Document Source를 보는 웹브라우저의 그 한가지 기능 때문일지도 모른다. 끝으로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고 이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그것이 곧 '정보의 공유'라는 이념을 통해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이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이 '정보 공유'의 이념 위에 존재한다면 적어도 인터넷의 이용자들이 Copyleft의 선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7.3.4. 'Magazine'에서 'Webzine'으로⁷²⁾ (박인성)

■ 들어가며

연일 언론을 장식해대는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이제 특정 '기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바라볼 정도로 대중화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대중화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라해도 WWW(World Wide Web - 이하 '웹')이다. 웹은 본래 인터넷 서비스의 한 종류에 불과한 것이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 웹은 인터넷과 동등한 개념 혹은 그 이상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었다고나 할까? 웹의 대중화는 많은 사건들을 가능하게 했다. 과거에는 학술망의 성격을 띤 인터넷은 웹으로 몰려든 다양한 대중들에 의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터넷이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많은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인터넷, 아니 웹을 통해 대체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웹을 통한 방송(TV, Radio 모두), 전화(Internet Phone)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 잡지로 대변되는 출판 역시 마찬가지였다. 출판은 이미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출판 과정이 디지털화하기는 하였지만, 웹은 그 미디어까지도 디지털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한 맥루한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는 실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양식인 'Webzine'을 모델로 삼아 이러한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앞으로 Webzine을 이야기할 때는 이전의 인쇄 매체로 존재했던 Magazine이 웹으로 서비스,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 Webzine?

Webzine은 World Wide Web의 'Web'과 Magazine의 'zine'의 합성어이다.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웹으로 만든 잡지'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Webzine에 대해 살펴보면 Web과 Magazine 모두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Magazine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주된 논의는 웹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 WWW의 특성

글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웹은 인터넷 서비스의 한 종류이다. 인터넷에는 웹 이외에도 텔넷(Telnet), FTP, 고퍼(Gopher), 아키(Archie), 그리고 유즈넷(USENET)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미 나와 있는 많은 문서들의 몫으로 돌린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웹이 인터넷의 대명사로 군림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웹이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이퍼텍스트는 쉽게 말하면 문서간의 연동이 쉬운 구조이다. 문서간의 연동이 쉽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정보의 흐름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퍼텍스트는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이 글이 하이퍼텍스트로 쓰여졌다면 여러분은 보다 쉽게 원하는 부분만을 찾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웹의 언어라고 부르는 HTML은 바로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준말이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 기능들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Web Browser, Netscape, MS Internet Explorer)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들로 인해 더욱 쓰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게 되었다. 또한 웹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텍스트 기반의 것이었던 반면 그래픽적 요소들을 갖추게 됨으로써 비전문가 대중들에게 한결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웹은 또한 제작이 무척 용이하다. 기존의 서비스들이 복잡한 유닉스 명령어들과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익숙해야 제공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웹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명령어들과 상대적으로 쉬운 HTML만 알면 바로 제작이 가능하다. 기초 수준의 HTML만 익히면 어느 정도의 웹 페이지(page) 제작이 가능하며 이를 인터넷과 접속된 컴퓨터에 올려 놓음으로써 자신만의 웹 사이트(site)를 갖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수동적 커뮤니케이션에 지친 대중들에게 손쉬운 송신자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웹은 비동시성을 갖는다. 이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행워해야만 가능했던 반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행워하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화는 거는 이와 받는 이가 동시에 수화기를 들고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반면, 전자메일은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자는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반응할 수 있다. CMC의 대표적인 특징인 쌍방향성을 웹 또한 가지고 있다. 수신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의 웹 기술은 점점 이러한 쌍방향성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72. 한양대 교지에 기고되었던 글입니다.

웹은 또한 수신자의 범위가 무척 넓다.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웹의 하이퍼텍스트 기능은 이런 인터넷을 말 그대로 거미줄(web)처럼 엮어줌으로써 이러한 범위를 더욱 넓힌다. 만약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그 곳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웹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의 기술들은 이러한 웹에 특성에 멀티미디어적 성격을 부여한다. 많은 웹 사용자들에게 웹 상의 동화상이나, 음악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웹은 기존의 미디어들을 한데 묶음으로써 더욱 강력한 미디어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웹의 특징들로 인해 웹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많은 미디어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논의의 대상인 Webzine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Webzine이 기존의 인쇄 매체인 Magazine과 다른 특성을 살펴보겠다.

- Webzine vs. Magazine

Magazine이란 무엇인가? Magazine이란 '일반적 혹은 특정한 관심 분야에 대해 대중에게 판매되거나 혹은 무료로 주어지는 출판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관심 분야를 가진 개인은 누구나 Magazine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않다. 기존의 대중 매체로서의 Magazine은 인쇄물이라는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그것은 다루는 주제가 협소하면 협소할수록, 대상 독자층이 적으면 적을 수록 더욱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한번 인쇄된 인쇄물은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한 이유로 오차나 편집상의 문제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거리였다. 또한 배포를 위해서는 추가의 경비와 노력 등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대중 매체가 그러하듯이 독자들로부터의 반응을 알아보기란 더욱 힘든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Magazine이란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자본이 아주 많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무척 탁월한,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만이 송신할 수 있는 제한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Webzine은 어떠한가? 웹은 인쇄 출판에 비해 발행이 쉬운 까닭에 누구나 웹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연결된 인터넷 회선이 보장하는 한 아무리 많은 독자가 생겨도 발행인은 추가의 종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쌍방향성이 보장되므로 사실상의 발행인과 독자의 구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발행인은 디스크 공간과 사이트만 제공해 주고 그 안의 내용은 수많은 다양한 독자들의 글들로 채울 수도 있다. 굳이 기자들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내용이 빈곤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지도 모르지만, Webzine이 기반으로 하는 웹, 인터넷은 알려진 바대로 정보의 바다이다. 인쇄 매체인 Magazine이 고립된 것인 반면, Webzine은 다른 수많은 정보들과 거미줄처럼 연결시킬 수 있다. 어딘가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발행인은 단 한 줄의 HTML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정보들을 곧 자신의 Webzine에 담을 수 있다. 웹이 가진 비동시성으로 인해, Webzine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현재의 독자와 다음의 독자가 읽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웹의 멀티미디어적인 특성으로 Webzine은 더이상 기존의 Magazine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발행인은 훨씬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내의 한 Webzine에서 표절 가요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에는 문제가 된 가요와 표절 대상곡의 오디오 파일을 연결, 들려줌으로써 기사가 전해주고자 한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주제면에 있어서 Webzine은 보다 전문적일 수 있다. 이것은 Webzine의 제작비가 Magazine에 비해 훨씬 저렴한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대중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인해 표현된다. Webzine의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Webzine은 우리에게 무척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Webzine은 보다 전문화된, 달리 표현하면 시장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자본과, 많은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도 없다. 따라서 Webzine은 어떻게 보면 게릴라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 현재 많은 Webzine들이 이러한 주제들에 의해 이룩한 성격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 Webzine의 예

이제 실재하는 Webzine들을 검색해 보기로 하자. 이제까지의 다소의 딱딱한 논의들은 지금부터 소개하는 몇 개의 Webzine들을 직접 봄으로써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Webzine의 대명사는 누가 뭐라해도 'Hotwired(<http://www.hotwired.com>)'일 것이다. 기존의 Magazine들이 인쇄 매체를 바탕으로 Webzine화하는 반면, Hotwired는 거꾸로 Webzine에서 출발 인쇄 매체인 'Wired'를 발행하고 있는데, Wired는 Webzine Hotwired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용자들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웹기술을 이용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내용 또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일단 Hotwired에 발을 들여 놓게 되면 페이지 특유의 분위기를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한곳 주목할 만한 곳으로 '24 Hours in Cyberspace(<http://www.cyber24.com>)'가 있는데 이 Webzine은 '온라인 디지털 기술이 실제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전세계 수천의 자원봉사자로부터 사진, 기사를 받아 이루어진다. 독자와 편집자 혹은 기자가 하나가 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의 대표적인 Webzine이라고 알려진 것 중에 'Schizo(<http://cgate.truenet.co.kr/schizo/>)'가 있다. 스키조는 '분열증'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창간사에 의하면 그들의 관심분야는 문화비평으로 그들은 다수의 목소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소수가 되려고 하며 현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말을 꾸미려고 하기 보다는 하고싶은 말을 '분열증'적으로 지껄어댄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진정 Webzine의 특성을 잘 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이네트에서 발행하는 'im@ge(http://www.iworld.net/im@ge/)'가 있다. 이미지는 네티즌에게 민감한 이슈들(검열, 카피레프트, 사이버포르노)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이슈들에 대한 실시간투표(Realtime Poll)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Webzine만이 가질 수 있는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나우누리의 'Puzzle(http://www.nowcom.co.kr/puzzle/)'은 이미 11호제를 발간하고 있는 Webzine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Webzine을 검색해 보고 싶다면 'John Labovitz's e-zine list(http://meer.net/~johnl/e-zine-list/)'를 참고하기 바란다. 10월 24일 현재 137개의 Webzine이 주제별로 링크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서치엔진 등에서 'webzine, e-zine'등을 키워드로 서치해 보면 많은 Webzine 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

Webzine은 아직은 낯설은 매체이다. 그러나 가능성을 많이 가진 매체이다. 필자가 이렇게 Webzine을 소개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 글을 읽고 Webzine을 보다 창조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어떠한 용도이든, 무슨 주제이던 상관없다. 기존의 매스 미디어가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 수동적으로 놀러 왔던 이들이 이제 Webzine을 통해 보다 능동적일 수 있게 되었다. 부디 여러분들도 자신의 명함에 '편집장'이라는 이름 한자를 달 수 있길 바란다.

7.4. 정보통신포럼73)

7.4.1. 미국 · 일본 · 유럽 정보통신정책의 비교연구74) (조형제75)

■ 머리말

서로간에 정보와 견해를 신속히 소통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통신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신화를 낳은 바 있고 근대 들어서는 우편과 전신, 전화라는 기술적 진보를 차례로 가져왔다. 서로의 음성을 직접 교환하는 전화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전화는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했을 뿐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실현한 통신수단으로서 각광받아 왔다. 20세기 말에 시작되고 있는 '정보통신혁명'은 의사소통을 향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통신수단의 발전과 동일한 연장선 상에 있다. 하지만 '정보고속도로'로 집약되는 현재의 정보통신혁명은 기술 발전의 폭과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에서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구분되는 단절성을 지닌다. 음성이나 자료, 영상 등의 정보가 단일한 매체로 통합되어 신속하게 대량으로 전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타 사회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됨으로써 기존의 생산, 유통, 소비, 여가 생활의 지형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 글은 현재의 정보통신혁명을 추진하는 중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 자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80년대 이후 세계의 정보통신산업은 지난 1백년간 지속해 온 기존의 패러다임이 몰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글은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변화 속에서 현재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의 정보통신산업이 겪고 있는 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설사 동일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의 정보통신산업은 특수한 제도적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보통신 패러다임의 출현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유럽의 정보통신산업은 각기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이들 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변화에 대해 민간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 추세 속에서 기존의 일국적 독점체제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 '정보고속도로'로 집약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적극적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 이는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대외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 외교전략(표준화, 지역 차원의 정보고속도로)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 선진국 정보통신산업의 변화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정보통신산업의 앞선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을 조건짓는 외적인 환경변수라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변화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시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서 마무리짓고자 한다.

■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변화

- 세계 경제의 변화와 정보통신산업

지난 1백년간 각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에 기초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정부는 우표와 전신, 전화 등

73. 그간 8차례 있었던 지식인연대 정보통신포럼의 발제문을 실습니다. 순서대로 1회부터 7회까지의 발제문이며, 자세한 자료는 참세상, goshop(지식인연대) 8번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울러 뜻깊은 이번 포럼을 기획, 진행해 주신 지식인 연대 영상정보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4. 이 글은 정보통신 토론회 1회 발제를 위한 글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글 전체와 이 메시지가 온전히 붙어 있는 한,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이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그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시에는 필자와 토론회 주제측에 사전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75. 울산대 교수,사회학

의 통신수단을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간주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독점적으로 이들을 공급해 온 것이다. 국영기업 중심의 독점체제는 무엇보다도 통신수단의 성격상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었고, 또한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었다(Noam, 1989, 257-258쪽).

세계적 차원에서 정보통신분야의 대표적 국제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나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각국의 독점체제에 기반하여 이들간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세계적인 규약이나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달리 말해서 ITU나 ISO는 각국 정보통신산업의 독점적 이해를 세계적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조절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들 국제기구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형식적으로 '1국 1표'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영향력이 관철되어 왔다(Cowhey, 1990).

그러나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에서 각국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 첫째로는,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종래의 GATT체제에서는 자유무역에 포함되지 않던 서비스와 지적 소유권 부문까지 자유무역의 적용을 받게 됐다. 즉,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발족한 WTO체제에서 정보통신 분야조차 서비스 부문에 포함됨에 따라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WTO의 NGBT(Negotiating Group for Basic Telecommunications)는 1996년 4월까지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자유무역 규범을 마련할 예정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최병일, 정인익, 권기현, 1994). 정보통신 분야에서 개방적인 시장 메카니즘이 관철된다는 것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원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 속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이 기존의 일국적 독점체제에 안주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수용하는 것이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대두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통신산업을 기존의 영역 내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영상 및 미디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베이스 분야로까지 확대시키면서 이들 분야를 디지털 신호로 통합시키고 있다. 즉 '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산업에서는 경쟁의 지형 자체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시장 관계 속에서 다른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분야 기업들과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신속하게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고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개방시스템과 다운사이징(downsizing), 네트워크적 협력관계가 혁신적 기업조직의 특성으로서 요구된다(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1994 a).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독점체제로는 다변화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여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되는 환경에서 정보통신 분야는 국민경제의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은 이전의 도로나 항만처럼 정태적인 인프라스트럭처로서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동태적인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인체의 '신경망'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통신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고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운용시스템, 부가가치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하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가 그것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나 작업과정 자체와 분리할 수 없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Bar, 1990, 24-34쪽).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우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독점체제를 지양하고 새로운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 새로운 정보통신 패러다임의 출현

그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현하여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 패러다임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자유화와 재규제화

80년대 이후 전세계의 정보통신산업은 자유화(liberalization)와 규제완화(deregulation)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자유화만이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통신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견해는 독점적인 통신사업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인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프랑스나 독일의 국영통신회사가 부분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도 이미 1998년을 목표로 한 유럽 차원의 통신시장 완전자유화 일정에 동의한 상태이다.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독점체제를 보장했던 통신정책 상의 규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규제완화가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화와 규제완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Gasman, 1994)76).

자유화를 급속히 추진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처럼 자국의 정보통신기업들이 상당 정도 경쟁우위를 가진 나라들은 급속한 자유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나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나라나 개도국들은 기본통신 분야는 장기간 보호하고 응용 서비스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자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Cowhey, 1990, 188-195쪽). 이런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1994년 4월 이후 시작된 NGBT 협상에 참여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을 비롯한 25개국들은 기본통신시장의 전면개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협상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전면개방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77).

자유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각국

76. 미국 하원의장인 공화당의 김그리치는 미국 정부의 통신산업 규제정책이 지나친 것을 비판하면서 향후 10-15년간은 정보통신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이나 규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Gingrich, 1995).

의 정부는 기존의 국영기업인 통신사업자까지 민영화시켜 정보통신산업 전반을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의 민영화를 어느 정도로 추진할 것인가, 각 사업영역별로 신규 사업자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 정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의 정책이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자유화가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부의 새로운 규제정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McGregor, 1994, 126쪽). 따라서 규제완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신정책의 역할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방식으로 재조정, 즉 재규제화(reregulation)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국민국가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정부정책이 소멸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유화는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변화를 특징짓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보고속도로

정부의 통신관련 정책이 완전히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은 9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정책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고속도로란 앞서 논의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각국 정부가 정보통신 부문, 나아가 경제 전반의 경쟁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조조정정책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80년대부터 각국 정부는 자유화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규제완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정보통신혁명이 가속화되자 각국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정보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보고속도로란 화상, 음성,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디지털 신호로 통일시켜 광케이블을 통해 교환하는 종합적인 정보통신기반을 지칭하는 것이다(Baran, 1995). 달리 말해서 정보고속도로란 멀티미디어 산업으로 통합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규제 하에서는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다른 산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입장벽을 허무는 규제완화가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정보고속도로 정책은 단순한 규제완화 이상의 것이다. 각국의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혁명의 다양한 내용을 정보고속도로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집약하여 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수요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정보고속도로를 단순한 정치적 캠페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정보고속도로가 15-20년간에 걸친 장기적 성격을 지닌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관련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명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보고속도로는 정부가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정책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패러다임의 또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③ 표준화와 지역통합

정보통신산업의 표준 설정 방식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78). 기존의 독점체제에서 국내적으로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일국적네트워크를 통합하여 통신사업자의 안정적 이윤을 보장해주는 기술적 수단이었다. 즉, 국내적으로 통신기간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가능하게 하고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베이스의 상호운용(interoperation)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독점적 통신사업자들은 기존의 기술체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새로운 기술혁신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ITU나 ISO는 세계적 차원에서 각국의 정보통신 표준간의 협상을 통해 조화롭게 국제 표준을 설정하도록 중재함으로써 일국적 독점체제를 보장해주는 데 기여해왔다(Hawkins, 1991)79).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이처럼 안정적이고 정태적인 표준화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기존의 표준화 메카니즘으로써는 세계 시장의 수요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실질적 표준'(de facto standard)이 형성될 때까지 시장 경쟁에만 맡겨놓은 것은 거래비용을 지나치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David, 1994, 8-9쪽). 시장에서 형성된 표준을 사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새로운 표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동태적 표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국적 독점체제의 틀을 넘어서는 지역적 차원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에 부합되는 새로운 경제단위로서 국민경제의 틀을 넘어서는 지역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민경제가 지닌 한정된 자본이나 기술, 시장 등의 제약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미, 아시아, 유럽 등 지역적 차원의 통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형태나 대응방식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지역통합의 추세는 80년대 이후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심적 경향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77. 한국의 경우에도 1995년 8월에 발표한 3차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1998년까지 통신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전자신문, 1995. 8. 12).
78. 표준(standard)이란 다양한 정도의 복합성을 지닌 물질적 상품들의 기술적 스펙(specification)이나 운영상의 특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표준은 생산업체들이 암묵적으로 또는 공식적 합의의 결과로서 의존하게 되는 일련의 기술적 스펙으로 이해할 수 있다(David, 1994, 2쪽).
79. ITU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는 부서는 CCITT(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Consultative Committee)와 CCIR(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이다(Bernt & Weiss, 1993, 164-167쪽).

이러한 지역통합의 추세와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지역적 차원의 표준화기구이다. 각국 독점체제들의 이해에 기반하여 그들간의 이해를 세계적 차원에서 조절해 온 기존 국제기구의 의사결정구조로는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역적 차원의 표준화기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신속성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수요나 기술 변화를 보다 동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ITU나 ISO 등 국제기구들이 지닌 의사결정과정 상의 비효율성을 상당 정도 극복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다(OECD, 1991, 52-55쪽)⁸⁰. 지역적 표준화기구는 일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의 중간에서 동태적으로 양자를 매개하는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적 차원의 표준화는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에서 추진하는 정보고속도로 계획을 이러한 표준화의 기반 위에서 지역적 차원으로 확대관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미, 아시아, 유럽 등 일정 지역에서 정보통신산업을 자국의 표준 하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지역적 차원의 정보고속도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변화과정에서 출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1) 자유화와 규제제화, 2) 정보고속도로 정책, 3) 표준화와 지역통합이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전환기의 세계 정보통신질서 : 기존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정책 :	특점과 시장보호	자유화와 시장개방
정책목표 :	공적 이해와 보편적 서비스 대응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표준화 :	정태적 표준화	동태적 표준화; 지역 정보고속도로

■ **맺음말 :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시사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동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각국의 정보통신산업은 특수한 제도적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표 2>).

<표 2> 미국,일본,유럽 정보통신산업의 비교

	미 국	일 본	유 럽
자유화와 규제제화	민간기업이 주도 1984년 AT&T 분할 90년대 중반 상호 사업영역의 참여허용	정부정책이 주도 1985년 NTT 민영화 90년대 들어 NTT의 재분할을 둘러싼 갈등	EU 집행위가 주도 1998년까지 기간망 및 서비스의 완전자유화 공동 연구기술개발정책 : 대기업들간의 협력부족
정보고속도로정책	[국가정보기반] 건설 민간기업의 이해와 [반독점법]이 서로 상충	[신사회자본] 건설 정부정책의 한계 : 정부부처들간의 갈등	[범유럽적 네트워크] 건설 '보편적 서비스'강조 독점적 통신사업자들의 저항
표준화와 지역통합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표준기구 : T1 [세계정보기반] : 미국 해계모니의 관철	NTT, KDD 중심의 표준기구 : TTC [아시아정보기반] : 일본의 주도권 추구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표준기구 : ETSI 미국적 표준의 지배적 영향

80. 물론 ITU나 ISO도 의사결정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차원의 표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현황을 보면, 민간 대기업이 주도하는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우위가 확연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민간 대기업들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면서 자신의 표준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정보고속도로를 지배하려는 야심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정보통신산업은 90년대 들어 정부 주도적인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의 정보통신산업은 EU라는 차원에서 자유화와 공동 연구기술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상과 같은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로, 세계적으로 자유화와 규제완화의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정보통신 패러다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방식이 더이상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후발국의 경우에는 민간기업들간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새로운 정보통신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들의 활력이다. 소수의 통신사업자들이 시장을 독점한 상태에서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화가 별다른 규제 없이 소수 대기업들의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지극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독점적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를 완화하기 위해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재벌을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지배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통신산업의 재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간기업들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풍부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이 '서비스'라는 인식 자체가 아직 부족한 한국의 통신산업이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지닌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한국으로서는 더이상 방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느 만큼 잘 적응하는가에 따라 향후 세계 정보통신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고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재편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정부, 그리고 모든 사회세력들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7.4.2. **정보통신기술과 생산방식의 변화⁸¹⁾ (이영희⁸²⁾**

■ **머리말**

1992년 12월에 새로 출범한 미국의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바로 다음해인 1993년 2월에 민간자본의 대규모 참여를 통해 정보고속도로(공식적 용어로는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즉 국가정보하부기반)를 건설하겠다고, 21세기의 뉴딜정책이라고도 불리우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면 클린턴-고어 행정부가 이토록 열정적으로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1993년 2월에 발표된 액션 어젠다는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배경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액션 어젠다에 따르면 정보고속도로 추진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ITF, 1993).

"과거에 국가간 경쟁의 승패는 그 나라가 어떤 교통기반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좋은 항구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나라는 해양교통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나라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었다. 2차세계대전 후 미국은 기존의 북서 고속도로망으로는 불충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각 촛을 연결시키는 고속도로망을 닦았고, 이것이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활동은 아스팔트 도로뿐 아니라 전자도로 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사회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현재 미국 내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보산업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통신과 정보 분야는 국내총생산(GDP)의 12% 이상을 차지해 매출액이 7,000억

81. 이 글은 정보통신 토론회 2회 발제를 위한 글입니다. 따라서, 누구내 글 전체와 이 메시지가 온전히 붙어 있는 한, 상업적 목적을제외하고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이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그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시에는 필자와 토론회 주최측에 사전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82.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달러를 넘어서었다. 더욱이 이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 오늘날 기업경영은 과거보다 더욱 정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에서조차 철이나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탄력적인 정보망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모든 기업과 소비자는 정보혁명을 통해 커다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신정부가 정보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세계경제무대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일본, 독일 등의 압박에 의해 미국 주요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함으로써 한동안 미국 제조업의 위기가 운위되곤 하였는데⁸³,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가들 보다는 훨씬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클린턴-고어 행정부의 정보고속도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Clinto & Gore, 1993; Council on Competitiveness, 1993). 그러면 정보고속도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고속도로란 각 기업과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부설되어있는 정보통신네트워크를 미국 전역에 확장함으로써 정보가 신속하게 전국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매우 빠른 속도의 전국적 정보통신망을 의미한다. 즉, 마치 1950년대에 미국에 건설된 고속도로가 각 주(州)마다 건설한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주간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의미이다. 결국 정보고속도로는 이미 개별적으로 부설되어 있는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통신네트워크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클린턴-고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는 사실상 이미 상당히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⁸⁴. 물론 아직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은 추진중에 있지만,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의 건설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각 나라의 기업들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현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보통신기술이 전통적인 자동화기술과 어떻게 다르며,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이 제조기업의 생산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변화속에 함축되어 있는 경제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방식이라 함은 한마디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법, 혹은 기술들의 체계를 의미하는 바,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원활한 조정(coordination)이 핵심이 된다. 한편, 생산방식은 한 기업에만 국한되어 완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생산과정은 하나의 기업이 중심을 구성하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이 중심기업에 가치사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산방식을 분석할 때, 분석적으로 두가지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기업내부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외부, 즉 기업간 관계의 차원이다. 생산방식을 구성하는 다른 하나의 측면은 노동의 역할이다. 인간의 노동이 불필요하게 되는 생산방식이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생산방식하에서는 노동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생산방식을 생산요소들 사이의 조정의 방식이자,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방식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물론 이 양자는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이미 학문적으로는 기술발전이 조직, 혹은 생산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Woodward, 1965; Perrow, 1967; Buchanan & Boddy, 1983; Clark & Staunton, 1989).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술발전이라 할 때, 상호연결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않는 자동화나 컴퓨터화를 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즉, 복수의 기업내·기업간 컴퓨터기기를 서로 연결시키는 통합적·네트워크적 정보통신기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호고립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동화기술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호 분리된 자동화나 정보기술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그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이 생산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 정보통신기술의 성격

여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생산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정보통신기술은 전통적인 기술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에 전세계적으로 정부나 기업할 것 없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뛰어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성

먼저 정보통신기술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전통적인 자동화기술과는 어떠한 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는가?

정보통신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이미 컴퓨터는 1950년대부터 발전하였지만, 80년대 초반

83. 미국 제조업의 위기를 주장한 논의들은 매우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The MIT Commision on Industrial Productivity(1988)과 OTA(1990)를 참고할 수 있다.

84. 미국에서의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과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박태건(1995)이나 김경돈(1995)을 참고할 것.

까지의 컴퓨터는 대체로 개별시스템으로만 존재하였다. 개별시스템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각각의 컴퓨터들이 생산과 사무의 자동화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상이한 컴퓨터들끼리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아 다양한 기능들간의 연결성·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으로 들어오면 네트워크를 그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이 널리 확산된다. 정보통신기술은 일반적으로 변환(conversion), 저장(storage), 처리(processing), 그리고 통신(communications)의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변환이란 투입(input)을 산출(output)로 바꾸는 기능이고, 저장이란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보존하는 기능이며, 처리란 투입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처리·계산하는 기능이며, 통신이란 이러한 정보를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물론 전통적인 기술들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전통적 기술은 이러한 4가지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였다는 점이다. 반면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전통적인 자동화기술과는 달리 C&C, 즉 컴퓨터(Computer)와 통신(Communication)이 통합됨으로써 이들 4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기능들의 통합은 결국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데,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오는 네트워크는 상이한 기종의 컴퓨터가 통신회선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매우 복잡한 대용량 고속의 데이터변환 처리능력이 요구되는데,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기능들의 통합이야말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하여금 기업의 생산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속성이 된다(Yates & Benjamin, 1991: 64-66).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베니거(Beniger, 1986)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과정을 효율적으로 제어(control)하는 데 매우 유효적이다. 한편 주보프(Zuboff, 1988)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성을, 그것이 단순히 정보처리과정을 '자동화(automate)'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을 '정보화(informate)'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아울러 강조되어야 할 점은 전체적인 자동화기술과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은 시간과 공간, 비용, 그리고 조직학습의 장벽을 대폭적으로 허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개발된 전신과 전화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허무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정보통신기술은 전신이나 전화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과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시간과 비용의 측면을 보면, 예컨대 한 페이지 분량의 텍스트를 뉴욕에서 약 850마일 떨어져 있는 시카고로 보내고 할 때, 전신은 0.083시간이 걸려 7.50 달러의 비용이 드는 반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면 0.0019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단지 0.31달러만이 소요될 정도로 정보통신기술은 뛰어난 속도와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Yates & Benjamin, 1991: 72).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기술발전이 따라 현재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가격도 더 싸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통신기술이 공간적 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의 전송과 통신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쉽게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준다. 예컨대 미국에 있는 기업본부와 한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그 기업의 생산공장 사이의 의사소통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매우 용이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또한 기업내, 기업간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조직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⁸⁵. 정보통신기술은 조직구성원들보다 많은 정보에 노출시키고, 그러한 정보를 학습할 계기를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조직학습을 제고시키는 유력한 기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보통신기술은 단순히 전통적인 컴퓨터기술에만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기술을 통신기술과 통합함으로써 시간 및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정보교류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혁신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 경쟁력

그러면 정보고속도로가 구체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주지하듯이 오늘날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기술과 제품의 수명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의 복잡도도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란 급변하는 시장수요에 고품질을 추구하는 소비자기호에 부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 하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조작, 그리고 활용이 필수적이다. 데이터교환 표준을 통해 상호조작가능성을 확보한 위에서 통신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응용,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사관 등의 하부 기반으로 정보기술들을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제조업 성공의 핵심이 된다. 즉, 정보가 기업의 하나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확장은 기업들의 전통적인 디자인, 개발, 생산, 그리고 지원과정을 현대화하고 향상시킬 뿐 아니라, 분리된 사업기능이나 활동들의 완벽한 리엔지니어링, 최적화, 통합을 가능케 할 것이다.

제조업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은 기술 및 시장평가, 연구개발로부터 판매후 지원 및 제품제처리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조공정을 변경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효과적인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은 중기기관이 산업혁명 당시 수행하였던 역할을 초월하여, 제조업의 작업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보다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제조업의 생산성, 품질, 유연성 및 비용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운 작업방법을 가능케 하는 조직 및 관리혁신까지도 수반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가히 혁명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혜택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 제조 공정내 및 공간간에 데이터를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송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제조과정을 혁신시킨다. 즉, 부품공급자, 파트너, 고객 그리고 경쟁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자료를 종합, 교환, 통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기업들의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을 신속하게 하며, 디자인으로부터 생산에

85. 조직학습이란 조직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이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학습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능력과 용량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Senge, 1990).

이르기까지 제품의 최적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킨다. 아울러 "가상(virtual)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테스트를 가능케 하고,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낭비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은 제조에 필요한 지식과 데이터, 응용 과정에 대한 정보, 제품정보, 교육훈련 자료 등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네트워크 위에서 활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전자사서함, 기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제조업자들이 부품과 부속품의 요구사항과 사양서를 급히 배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능력있고 경쟁력 있는 공급자가 장소나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응답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이루어진 소재, 부품, 및 제조공정의 혁신들을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게 되고, 부품공급업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능력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제조기술들을 정보통신네트워크로 통합시킴으로써 기업은 제품의 전생애를 관리하고 제조공정의 품질, 유연성, 그리고 즉각적 대응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품개선프로세스를 단축시키고 낭비와 중복업무, 불필요한 재고와 비용도 감

킬 수 있다⁸⁶⁾. 한편 정보통신네트워크는 제조관련 정보의 처리, 분석 및 배포를 위한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한다. 또한 정보통신네트워크는 컨설팅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창출은 기업의 사업과정을 개선 또는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주요 응용분야의 하나인 전자 상거래와 전자도서관 및 교육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사업 운용, 즉 금융거래, 시장 분석, 종업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공급자/고객관계 등의 전체 소비용과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전자 상거래와 은행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연계한다면 금융거래는 최소한의 종이 작업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소규모 기업에게는 금융위험을 감소시킨다.

정보통신네트워크는 공급자와 고객간의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급자와 고객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은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needs)를 조사함으로써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빨리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교육 및 훈련은 종업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지속적으로 신속한 기술변화에 익숙케함으로써 정보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이상과 같은 고도화된 정보통신네트워크가 노동과 자본이용의 감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많이 알려져 있다. 정보통신네트워크가 제조업의 상품 및 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즉 CAD(Computer Aided Design) 및 동시다발적인 엔지니어링의 적용은 제품결합률을 80%까지 줄인다고 한다. 이처럼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제조과정은 품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총비용을 30-60%까지 감축하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은 잘만 활용된다면 기존의 그 어떤 기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기업내부뿐만 아니라 기업외부의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 결과는 기존 생산방식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 정보통신기술과 생산방식의 변화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기술적 혁신성과 이를 활용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구축이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그럼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이 실제로 생산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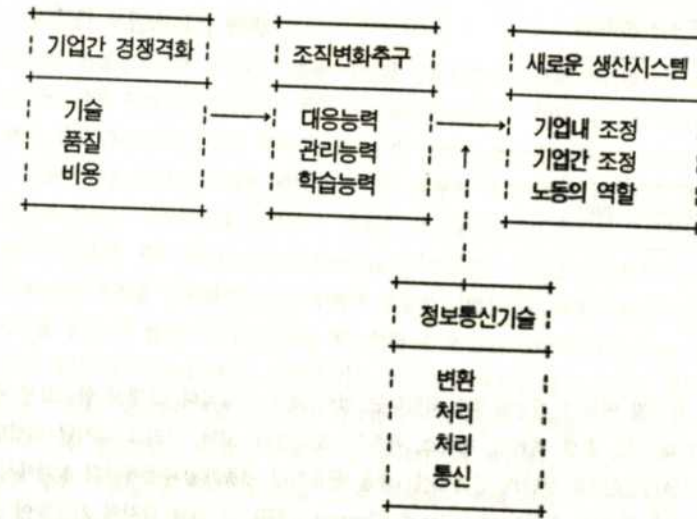
전통적인 자동화기술에 비해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기업의 생산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기술, 품질 및 비용을 둘러싼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시장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 기업에 대한 관리능력, 그리고 조직의 학습능력을 내재화하고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조직변화를 가능케 해주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그 결과 기업의 생산방식은 크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방식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법, 혹은 기술들의 체계를 의미하는 바,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원활한 조정(coordination)이 핵심이 된다. 조정은 부분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관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메카니즘은 기업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간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한, 어느 시기에도 존재하였지만 정보통신기술은 조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현저하게 변화시켰다. 예컨대 정보통신기술은 제품설계, 엔지니어링, 부품구매, 제조, 판매 부문 사이의 원활한 정보흐름을 통해 이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방식에 지능을 부여한다. 그 결과 컴퓨터통합생산(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CIM)이 현실화하게 되는데, CIM 생산시스템 하에서는 전통적인 체계과학(system science)을 대신하여 지능에 대한 관리(management of intelligence)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Jaikumar, 1993). 아울러 생산방식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노동이다. 노동이 생산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대한 파악은 생산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방식의 변화는 노동의 방식, 혹은 역할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86. 이러한 생산방법을 일각에서는 'Agile 생산'이라고도 한다. 'agile 생산'이란 린(lean) 생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크게 의거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agile 생산'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조직, 사람, 그리고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킴으로써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87. 이하에서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개념은 정보통신네트워크기술과 동의어이다.

<그림 1> 정보통신기술과 생산방식의 변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조정메카니즘을 어떻게 변모시키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Malone & Rockart, 1991). 첫째, 정보통신기술은 조정비용 자체를 극도로 낮춤으로써 기존의 인간에 의한 조정을 정보기술로 대체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위계가 축소되는 경향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조정의 절대적인 양 자체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은 기업에서 상시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조정집약적(coordination-intensive) 구조를 통해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그런데 기업의 이러한 조정메카니즘은 기업내부의 차원과 기업외부, 즉 기업간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기업내 조정방식과 기업간 조정방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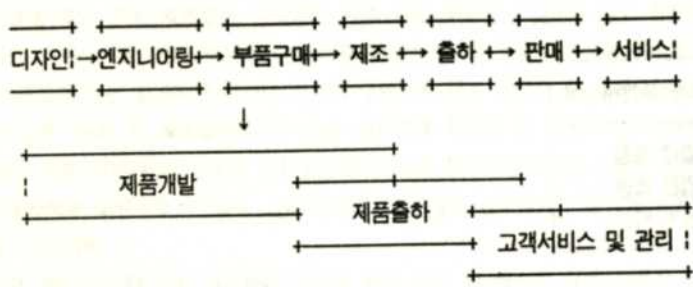
- 기업내 조정방식의 변화

기업내 조정방식이란 단일의 기업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기능영역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내부적 기능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업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네트워크기술이 발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내 조정은 주로 엄격한 분업과 그에 상응하는 위계의 구축, 행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정은 주로 위계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⁸⁸⁾.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간관계가 빚어내는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생산시스템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정을 가능케 해준다. 기업내 생산시스템 상에서의 조정방식의 변화를 기업내 생산과정의 가치사슬을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가를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시스템은 제품설계 -> 엔지니어링 -> 부품구매 -> 제조 -> 출하 -> 판매 -> 서비스라는 일련의 가치사슬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들 각각의 기능들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상호의존성이 매우 적다. 이 각각의 기능들은 모두가 공통의 제품을 둘러싼 기업활동이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분업이 엄격하고, 각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형 모델(linear model)에 각하고 있었다. 예컨대 생산엔지니어부서는 설계된 제품을 생산라인에서 쉽고 정확하게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품설계부서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역으로 제품설계부서가 보다 현장지향적인 설계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 기능부서 사이의 연계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러한 상이한 기능들 사이의 조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기업내 상이한 기능들 사이의 결합을 현저하게 촉진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각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대체로 전통적인 7개 단계 정도의 제품생산 및 판매의 가치사슬은 제품개발, 제품출하, 그리고 고객서비스 및 관리라는 3단계의 가치사슬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88. 이는 직접적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활동에 대한 조직화원리가 기본적으로 테일러주의적 분업과 통제에 입각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제품생산 및 판매의 가치사슬의 변화



자료: Rockart & Short(1991: 207)를 필자가 약간 변형.

특히 제품설계, 엔지니어링, 부품구매, 제조, 판매 부문 사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GM, 올렛 팩커드, 제록스, 록히드, 모토로라, 코닥, 그리고 디지털 이큅먼트 등과 같은 많은 대기업들은 제품개발의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 CAD/CAM과 여타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설계에서 생산에 이르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가치사슬)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Hammer & Champy, 1993). 그 결과 각각의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의 반복적 피드백과정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시장의 제품출하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켰다. 예컨대 코닥사는 전통적인 순차적, 병렬적 설계프로세스의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CAD/CAM 기술을 활용하여 동시엔지니어링에 의한 새로운 제품설계방법을 도입함으로써 35mm 일회용 카메라의 경우, 개발에서 생산까지 70주가 걸리던 것을 거의 절반, 즉 38주로 줄였다. 아울러 제품출하과정에 있어서의 가치사슬의 붕괴도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정보통신기술은 고객주문, 부품구매, 자체계획, 그리고 출하관리를 담당하던 기존의 상이한 정보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준다. 노튼사(Norton Company)는 "노튼 커넥션"이라고 불리는, 기업본부와 영업망을 연결시키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문처리와 자체관리를 할 수 있었다. 웨스팅하우스,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취했다. 여기서는 GM의 사례를 통해 기업내 생산시스템 조정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겠다(Francois Bar, 1990).

GM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생산과정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GM은 C4(CAD/CAM/CAE/CIM)에 기반한 정보하부기반을 통해 설계, 제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있다. GM에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개발과정, 즉 구상에서부터 시장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60% 정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 총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65개월이었다. 따라서 65개월을 60% 정도 단축시키려고 하면, 각 기능부문에 대한 단순한 자동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이것으로는 기껏 20%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 자동차생산의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동시공학(simultaneous engineering, synchronous manufacturing)이다. 물론 이러한 생산시스템의 재구조화는 무엇보다도 기업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처리 하부기반의 완비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동시공학이란 자동차 부품이나 시스템 생산에 있어 디자인, 생산, 조립에 종사하는 다양한 팀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련의 생산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한 부분인 펜더를 만들 때, 생산 엔지니어와 툴 메이커(tool maker)는 펜더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쓰일 툴 설제자들과 동시적으로 작업하면서(단일 공간에서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그들이 설계한 것의 제조가능성(manufacturability)에 대한 정보를 스타일링 엔지니어들과 신속하게 교류함으로써 생산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스타일링 엔지니어들은 원가팀, 차체 엔지니어링팀, 구조분석팀, 금형 엔지니어링팀 등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필요하다면 조기에 설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된 CAD시스템이야말로 동시공학의 토대가 된다. 현재 GM은 기업내에서의 이러한 복잡한 정보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EDS라는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설치하였다. 이 EDS 네트워크는 분산적 데이터 관리시스템인데, 모든 관련정보를 설계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부분에 대한 제조, 자금, 혹은 테스트에 관한 정보 등을 CAD 파일과 연결시킨다. EDS에 대한 중앙제어센터는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들을 회사내 모든 곳에 확산시켜 생산정보에 대한 중업원들의 접근을 관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내 조정방식의 변화는 기업조직 자체도 간소화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에 의존한 기능부문의 조정의 용이성과 의사소통 비용의 저하는 전통적인 위계사다리의 수를 크게 줄여 놓아, 기업조직의 구조는 이른바 '평행형 조직'(flat organisation)으로의 변화경향을 띠게 된다(Galbraith & Lawler III, 1993). 전자 우편, 컴퓨터회의 및 전자 게시판 등은 상이한 부문간 조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든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는 기업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쉽게 조정하여 일시적인 공동작업을 위한 팀, 혹은 애드호크리시(adhocracy)를 수시로 조직하고 해체할 수 있게 되므로 엄격하고 경직적인 분업에 기초한 위계의 필요성은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GM은 기존의 14-15개에 달하던 관리계층사다리의 수를 5-6개로 줄였으며, 이스턴 코닥사의 경우, 총괄 관리자와 현장 실무 관리자 사이에는 무려 13개의 계층사다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개에 불과하다. 인텔 역시 일부 부서 계층의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였다. 휴렛 팩커드는 이 점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판매부진과 이윤저하, 그리고 사기저하로 고통받고 있던 휴렛 팩커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조직간소화를 통해 관리적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결재 단계의 축소, 의사결정의 신속화, 제품개발팀의 통제력 강화를 토대로 기업업적의 현저한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Davidow & Malone, 1992). 물론 이러한 평행형 조직구조의 형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이 없어도 가능

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조직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경영정보시스템'(MIS)의 도입과 결부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⁸⁹⁾.

- 기업간 조정방식의 변화

기업간 조정방식이란 상이한 기업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기업의 역사를 기업간의 관계가 어떻게 조정되어 왔느냐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들에서 보듯이 기업간 관계의 조정방식은 기업의 생산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Chandler, 1977).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초반에 전형적인 제조기업은 극히 한정된 수의 제품들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들이었다. 대체로 이들은 판매와 구매는 외부의 독립기업에 위탁하고 자신들은 가장 핵심적 기능인 생산에만 몰두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전신과 철도가 시장확대를 가져왔고, 새로운 대량생산기술의 개발은 규모경제효과의 중요성을 창출하였다.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복수사업부제(multidivisional) 기업구조는 새로운 대량생산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장에 의해 이루어졌던 기업간 거래에 대한 조정을 내부화함으로써 수직적 통합형 기업모형을 새롭게 확산시켰다. 즉,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능들을 내부화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Williamson, 1981). 일반적으로 시장을 통한 조정은 거래비용은 많이 발생시키지만, 생산비용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고, 역으로 내부화를 통한 조정은 생산비용은 많이 발생시키지만 거래비용은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경제적 거래비용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무어의 법칙(Moore's law⁹⁰⁾)이 말해주듯, 시간이 갈수록 정보기술의 가격이 대폭적으로 낮아지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업간 거래의 조정비용 자체도 낮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구매자들은 좋은 부품을 싼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많은 시간적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전자시장(electronic market)을 통해 부품 공급업자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매우 싼 가격에 제공해주므로,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된다(Malone, Yates & Benjamin, 1994).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부분, 즉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⁹¹⁾) 만을 내부화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시장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전통적 관행이었던 수직적 통합을 통한 내부화보다는 시장에서의 기업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흐름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간 조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전자JIT(electronic just-in-time)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다. JIT는 원래 일본의 자동차산업에서 발전된 모기업-하청업체간의 부품공급시스템으로,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납품함으로써 재고를 줄이고, 모기업의 시장대응력을 높이는 매우 효율적인 부품관리방식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이 모기업에 근접성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JIT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공간적, 지리적 장벽을 타파한다. 전자JIT와 EDI는 기업간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네트워크에 바탕한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판매와 구매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시 모기업과 하청업체가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공동으로 작업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 미국의 주요 자동차메이커들은 부품공급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사양, 가격, 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정보를 통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적기의 구매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가상적 수직통합"(virtual vertical integra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은 기업간 조정방식을 현저하게 변모시킨다. 이하에서도 GM의 신에공장인 Saturn의 사례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기업간 조정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자동차기업은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부품들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신기술인 Saturn공장은 기존의 부품거래의 관행을 허물고 새로운 기업간 연계관계를 창출하고 있다. 즉, 이 공장에서는 부품생산을 내부화하지 않고 대부분을 시장거래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Saturn공장은 자사와 연결된 300여개의 부품공급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제조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부품공급자들은 Saturn공장에서 구매주문서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즉, 부품 공급업체들은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 있는 자동차제조업체의 생산 스케줄을 조회하기만 하면 된다. 온라인 정보를 통해 부품공급업체들은 자진해서 적절한 부품을 필요한 조립공장에 보낸다. 예를 들어, Saturn공장이 다음 달에 자동차를 몇 대 생산할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브레이크를 공급하는 회사는 자사의 제품생산과 출하 일정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Saturn에서는 온라인으로 브레이크 적재순서까지 알려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립공장에 납품되는 부품들은 하역되는 순서대로 바로 조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세스에는 서류, 즉 구매주문서, 송장 등이 전혀 필요 없다. 부품을 실어 보낸 후에 부품공급업체는 "이것들이 폐사가 귀사로 보낸 부품들입니다"라는 전자 메시지를 Saturn공장에 보낸다. 부품상자가 도착하면, 물품 수납원은 전자봉으로 그 상자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한다. 그러

89. 정보통신기술과 조직변화의 시간적 순서는 3가지의 형태가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되기 전에 미리 조직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기술 도입과 조직변화 양자를 동시에 시도할 수도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일단 도입하고 그 후에 조직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McKersie & Walton, 1991).

90. 무어의 법칙이란 정보기술이 3-4년을 주기로 성능은 2배로 향상되는 반면, 가격은 2배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91. 현재와 같은 급격한환경변화의 시기에는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핵심역량이란 경쟁자보다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고,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능력을 의미한다. Hayes & Pisano(1994) 참고.

면 컴퓨터는 그 물품이 공장의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그에게 알려 준다. 그리고 바코드의 스캐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품대금의 지불처리가 시작된다. 결국 생산일정 데이터 베이스와 EDI라는 정보통신기술이 Saturn과 부품공급업자를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될 수 있게 하였고, 양쪽 모두의 간접비용을 줄이고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Hammer & Champy, 1993; LeFauve & Hax, 1993).

현재 GM은 Saturn의 이러한 성공에 자극을 받아 미국에 있는 전체 공장에 EDI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⁹²). 그런데 이러한 정보통신네트워크가 전사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각 공장의 데이터가 서로 호환될 수 있어야 하므로 GM은 자사 고유의 기술적 표준을 확립하고 EDS*NET이라는 네트워크를 깔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은 GM의 표준이 관련 부품업체를 제외한 타사의 표준과 일치되지 않아 정보교류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Bar, 1990).

이상에서 살펴본 기업간 조정방식의 변화는 아마도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이러한 기업간 조정방식의 변화는 결국 기업의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미국 기업의 생산시스템은 단위 기업 차원에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조정비용의 감소는 기업간 네트워크의 형성을 조장하고, 위계 대신에 시장을 복원시키는 경향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기업의 생산시스템도 단일 기업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복수의 기업간의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기업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된다. 여기서 바로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 혹은 아메바형 기업이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한 기업이 제품생산과 관련된 모든 생산활동을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핵심역량을 보존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의 역량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상기업"은 전통적인 생산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조정원리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 노동의 역할변화

정보통신기술은 기업내, 기업간의 조정방식 뿐만 아니라 노동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정보통신기술이 초래하는 노동의 역할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전략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된다는 점이다⁹³). 즉, 정보통신네트워크에 기반한 새로운 생산방식 하에서는 노동이 부차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왜 정보통신기술은 노동을 부차화시키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의 유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생산과정의 기계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노동력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동력의 편성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생산활동 전체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일본의 도요타생산방식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고, 생산과정의 기계화, 자동화, 더 나아가서는 네트워크화를 통해 생산활동을 유연화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우리가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GM과 같은 기업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략이다. 그러나 물론, 이 두가지 전략은 분석적 목적에서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지나치게 배타적인 범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자의 전략이 동시에 추구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느 쪽에 더 강점을 두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두가지 접근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이처럼 노동의 역할에 대한 이 두가지 전략적 접근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후자의 접근법이 전자의 접근법을 서서히 압도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경향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가능한 노동에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생산활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접근법이 노동력 편성의 유연성제고를 통해 생산활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접근법보다 더 일반적인 전략이 될 것처럼 파악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후자의 전략은 노동을 부차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 후자의 접근을 알트만 등(Altmann, Kohler, & Meil, 1992; Tokunaga, Altmann, & Demes, 1992)의 명명법에 따라 "시스템적 합리화"(systemic rationalization)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합리화를 추구할 경우, 유연성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노동력의 활용이 아니라 첨단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와 통신기술은 다양한 생산기능들을 제어(control)하고 감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특히 단위 기능이나 단위기업의 경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기능, 다양한 기업들을 상호 연계시키고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제어기술과 통신기술은 가장 결정적인 유연성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량생산의 경직성과 소량생산의 비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초기업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규모경제(economies of scale)의 이점과 범위경제(economies of scope)의 이점을 함께 결합시켜줌으로써 유연성과 경제성의 상호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시스템적 합리화의 결과 노동은 더 이상 유연성 제고의 핵심적인 준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적 합리화 하에서 이제 직접적 생산과정의 유연성이란 유연한 자동화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조직재구조화와 제어체계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스템적 합리화의 핵심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탄력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지, 노동의 잠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진술이 시스템적 합리화 하에서는 더 이상 노동이 필요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는 안된다. 비록 노동이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적 합리화전략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는 없게 되지만, 체계적인 통합생산과 생산분

92. 포드사 역시 DDL(Direct Data Link)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부품공급업자와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포드에 납품하는 1,500여개의 공급업자들은 DDL을 통해 디트로이트에 있는 부품재고관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포드의 재고 상황 및 북미지역에 있는 17개 포드 조립공장 각각의 부품출하에 대해 실시간(real time)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Gunn(1992) 참고.

93.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지위저하는 주로 생산노동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사무실 종업원들의 의사소통과 직무만족도, 자율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Spruill & Kiesler(1993)를 참고할 것.

산화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노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다만 노동은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시스템적 합리화 하에서 전체적으로 노동의 역할이 부차화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노동이 동결화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 내부의 다양한 총화가 이루어진다. 먼저 노동은 기계의 단순한 조작과 감시를 담당하는 다수의 저숙련 단순직무군과 총체적 하청기업간의 통합이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하청기업의 노동자들 역시 모기업의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포섭되는데, 하청기업에서도 정보통신네트워크가 중요해지면서 노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이 생산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주로 생산활동에 대한 조정방식의 변화와 노동의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면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생산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개념정의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기술은 기존의 포드주의 생산방식을 포스트 포드주의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대체시키고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현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변화된 생산방식을 전통적인 포드주의의 단순한 연장선으로만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포드주의 패러다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포드주의와 포스트 포드주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전자가 미숙련 단순노동자들과 전용기계화, 자동화의 결합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인 반면, 후자는 숙련노동자들과 범용기계화, 자동화의 결합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이라는 점에서 찾아진다⁹⁴). 이렇게 볼 때,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변화된 생산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대량생산이나 집중보다는 이들간의 네트워크와 분산을 증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위계구조를 붕괴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포드주의와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새로운 생산방식은 범용자동화와 정보통신네트워크에 의거하면서도 여전히 기능적으로 양극분화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대량생산모델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포드주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이 매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방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포드주의의 범주로 묶을 수는 없지만, 포스트 포드주의의 범주로 묶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생 산방식을 잠정적으로 "분산형 포드주의"로 개념정의하고자 한다. "분산형 포드주의"라는 개념에서 '분산형'이라는 접두어는 전통적인 생산방식 이 위계와 집중성, 그리고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드주의였다면, 새로운 생산방식은 네트워크와 분산, 그리고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전히 '포드주의'라고 보는 것은 이 새로운 생산방식이 기존의 대량생산의 논리를 완전히 대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생산방식의 경직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의거한 유연성으로 보완, 수정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결론: 생산방식 변화의 양면성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이 생산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해 왔다. 사실상 대부분의 변화가 그러하듯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이러한 생산방식의 변화도 긍정성과 부정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긍정적인 측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에 입각한 생산방식의 변화가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진, 기업업적의 향상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가져다주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부정적 측면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온 생산방식 변화의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들 수 있는 것은 고용불안 정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기반한 자동화는 필수적으로 고용삭감을 초래하지만, 특히 이것이 기업내에서, 혹은 기업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에는 고용삭감의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은 기업내 조정의 담당자였던 위계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평행형 조직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이른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business reengineering)에 의한 이러한 조직의 간소화과정은 결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특히 전통적 위계사다리의 허리를 구성하던 중간관리자층에게 심각한 고용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위협은 단지 중간관리자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기업의 생산시스템 전체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하나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것, 즉 CIM의 추구는 그만큼 생산노동자, 특히 단순기능적 노동자의 고용입지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 인 내부노동시장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이른바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의 문제이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구축된 네트워크에서는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크게 변화하고, 시스템으로의 종속화가 더욱 강해진다. 노동조건 변화는 구체적으로 숙련노동의 진부화, 직접적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생산노동의 비중저하, 새로운 생산방식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동자층의 증가, 데이터입력 과 시스템감시 등을 주업무로 하는 '시스템보완형' 노동의 증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더욱이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부적응에 기인하는 테크노스트레스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는 기업간 관계에서 새로운 지배, 종속구조가 탄생될 수도 적고, 하청관계로 연결된다고 해도 양자간의 관계는 지배, 종속적인 성격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 대기업들이 전통적 인 내부화전략 대신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중소하청업체들을 전자JIT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기업간 관계의 새로운 조정을 꾀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아직은 정보통신네트워크가 관련기업들만을 포섭하는 폐쇄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하청기업의 대

94. 포드주의와 포스트 포드주의의 다양한 차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영희(1994)를 참고할 것.

기업에의 의존.중소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형성에 소요되는 투자가 매몰비용(sunk cost)으로 되어 네트워크에 진입.퇴출의 장벽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위에 있을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감시.속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화에 대한 대응능력에 따라 거래기업이 선별.도태되기 때문에 자금력.기술력.인상 대적으로 뒤떨어진 중소기업은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岡室博之, 1994). 다시 말하면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의 전통적인 내부화 생산 시스템을 대신하여 시장거래를 다시 복원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시장에서의 거래 주체들 사이의 관계는 지배.종속적인 형태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폐쇄성 문제는 기술적 표준화를 통해 한 기업군의 네트워크가 타 기업군들의 네트워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발전된다면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폐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부정적 문제들은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치루어야 할 불가피한 비용은 아니다. 아울러 이러한 비용을 이유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기술이란 그 자체 아무런 결정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술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 도입.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 기술은 매우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용불안정이나 테크노스트레스문제, 그리고 기업간 지배.종속의 문제 등은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과가 결코 아니다. 기업조직의 구성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미리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응용의 디자인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미리 예방.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정보사회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과 개입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 참고문헌 ◇

김경돈, 1995, "미국의 정보기반구조 발전과정 분석", (통신정책동향), 통신개발연구원, 2월
 김은상, 1995, (전략경영과 EDI), 매일경제신문사
 박태건, 1995, (엘 고어 정보초고속도로), 길벗
 이영희, 1994, (포드주의와 포스트 포드주의), 한울출판사
 Altmann, N., Kohler, C., & Meil, P. (eds.), 1992, Technology and Work in German Industry, London: Routledge
 Bar, F., 1990, "Configuring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for the Computer Age: The Economics of Network Control", BRIE Working Paper 43
 Beniger, J.R., 1986, The Control Revoluti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Origi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uchanan, A. & D. Boddy, 1983, Organizations in the Computer Age, Aldershot: Gower
 Chandler, A.D.Jr., 1977,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lark, P. & Neil Staunton, 1989,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Organization, London: Routledge
 Clinton, W.J. & Albert Gore, Jr., 1993, 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A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 Washington, DC: White House Council on Competitiveness, 1993, Vision for a 21st Century Information Infrastructure, Washington, DC.
 Davidow, W. & Michael S. Malone, 1992, 강자모 역, 1994, (가상기업), 세종서적
 Galbraith, J.R. & Edward E. Lawler III, 1993, 박수규 역, 1994, (21세기 기업), 한국경제신문사
 Gunn, T.G., 1992, 김석용.김대식 역, 1994, (21세기 메뉴팩처링), 동아출판사
 Hammer, M. & James Champy, 1993, 안중호.박찬구 역, 1993, (리엔지니어링 기업혁명), 김영사
 Hayes, R.H. & Gary P. Pisano, 1994, "Beyond World-Class: The New Manufacturing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IITF(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1993,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Action, Washington, DC, September
 Jaikumar, R., 1993, "200 Years to CIM", IEEE Spectrum, September
 LeFauve, R.G. & Arnoldo C. Hax, 1993, "Saturn: The Making of the Modern Corporation", Stephen P. Bradley et al. (eds.), Globalization, Tech
 nology, and Competition: The Fusion of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1990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Malone, T.W. & John F. Rockart, 1991, "Computers, Networks and the Corporation", Scientific American, September
 Malone, T.W., Yates, J. & Robert I. Benjamin, 1994, "Electronic Markets and Electronic Hierarchies", Thomas J. Allen & Michael S. Scott Morton (ed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orporation of the 1990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cKersie, R.B. & Richard E. Walton, 1991, "Organizational Change", Michael S. Scott Morton (ed.), The Corporation of the 1990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994, Putting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o Work: A Report of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Committee on Applications and Technology, NIST Special Publication 857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0, Making Things Bette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errow, C., 1967,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Organiz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
 Rockart, J.F. & James E. Short, 1991, "The Networked Organization and the Management of Interdependence", Michael S. Scott Morton (ed.), The Corporation of the 1990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enge, P.M., 1990, "The Leader's New Work: Building Learning Organizations", Sloan Management Review, Fall
 Sproull, L. & Kiesler, S., 1993, Connections: New Ways of Working in the Networked Organiz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The MIT Commission on Industrial Productivity, 1988, 신영수 역, 1990, (메이드 인 아메리카), 시사영어사
 Tokunaga, S., Altmann, N., & Demes, H. (eds.), New Impacts on Industrial Relations: Internationalization and Changing Production Strategies, Munchen: Iudicium Verlag
 Williamson, O., 1981,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7
 Woodward, J., 1965,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Yates, J. & Robert I. Benjamin, 1991, "The Past and Present as a Window on the Future", Michael S. Scott Morton (ed.), The Corporation of the 1990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Zuboff, S., 1988,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The Future of Work and Power, New York: Basic Books
 岡室博之, 1994, "自動車産業における企業間情報ネットワークの展開", (商工金融), 1月

7.4.3. 정보화사회와 여성⁹⁵⁾ (장여경)

이번 주제는 그간 있었던 지식인연대 토론회의 주제들과 그로 촉발된 논의들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적 입장에서 소위 '정보화 사회'를 조망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이 시점의 여성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실질적 과제가 제기되었으면 한다. 먼저 정보화사회의 각종 환상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유토피아적 정보화사회론은, 의도/비의도적으로 자본의 거대한 산업 구조 재편⁹⁶⁾을 위한 이데올로기 유포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람을 강조하는 각종 정보화 구호를 볼 때마다 과거 인류 역사상 나타났었던 유토피아론이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고 사회변혁의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과 미국 주도의 정치, 학계 사람들로부터 촉발된 정보화사회론은, 국내 운동 단체들에게도 '단체 정보화', 즉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운동 단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구적인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즉 PC통신에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웹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은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자본의 핵심기술로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변화에-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지배체제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주요 모순관계인 임노동 관계로부터 오늘의 주제인 여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보화'가 끼칠 영향을 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며, 따라서 추세를 외면하거나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는 것도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즉, 이제는 단순한 '낙관론' 혹은 '비관론'으로부터도 한발짝 더 나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정보화사회의 의도성에 대한 적극적인 통찰과 각 영역에서의 대응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언급들에 대해 여성들이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말들 때문이다. 먼저 국가정보화백서에서 보장하고 있는(?)정보화사회를 살펴 보자.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은 사회와 경제에 넓게 확산되고 있다. 가정생활, 문화생활도 폭넓게 정보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보화가 가정생활에

95. 통신연대 게시판지기, 전 여성문화예술기획 간사
 96. 정보화사회가 과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유의미한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분분하다. 제1회 토론회에서 울산대 조형제 교수는 '자유화와 재규제화' '정보고속도로' '표준화와 지역통합'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성으로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화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최근의 크고 작은 기업들간의 M&A, 미국의 표준 독점과 같은 추세에 보다 더 주목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본질을 자본주의적 모순 해결 방식으로서의 거대한 산업구조 재편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져다 줄 가장 큰 혜택은 가사노동의 자동화이다. 전화는 물론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통신기기가 가정생활에 이용됨으로써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더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각종 가사기구들은 점차 청소, 요리, 세탁 등의 일을 대신해 주게 될 것이다. 게임머신을 비롯한 각종 오락기구는 개개인의 여가시간을 더욱 흥미있게 해 줄 것이다. 가사자동화로 해방된 주부와 사무자동화로 산업사회에서 업무의 질이 향상된 남성이 가정에서 보다 차원 높은 자기 실현을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가사자동화는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것을 제공해 준다. 가정의 정보화가 더 진행되면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가족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에서 해방된 여성들은 다양한 취미생활과 개인생활을 누릴 수가 있으며, 동시에 경제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성에 대한 남녀의 역할분담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소멸되어, 함께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남녀평등으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재택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중심의 가정이, 직접적인 생산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1994 국가정보화백서 '정보화의 발전 방향')

21세기에는...소가족화에 따라 가족구조와 그 기능이 변화하여 가족의 노인 및 아동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과거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6 국가정보화백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화')

이 언급들에서 가장 아이러니칼한 부분은 성역할에 대한 언급의 불일치이다. 여성에게 정보화사회와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사회가 규정한 여성의 가정내 성역할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수행하도록 보장해 줄 것이며, 동시에 주로 남성의 성역할로 보장되어 있는 가정 밖의 경제 생활로의 참여도 확대시켜 줄 것이라고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 자체의 스테레오 타입은 주요 여성 억압의 기제 중 하나로 그간 기능해 왔던 사실에서, 가정 내의 여성의 성역할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정보화사회'가 과연 궁극적으로 여성들에게 '해방'이 될 수 있을까 더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성별분업 자체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의심해 볼 만 하다. 또한 국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정보화' 사업인 만큼, 요즘 진행되고 있는 각 분야별 정보화 과제들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여성과 관련한 분야에는 어떠한 정책적인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여성문제에 관한 한 '정보화'는 국가에게도, 국민에게도 아직까지 막연한 구호와 신기루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정보화와 여성에 대한 언급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여성 노동 시장에 대한 긍정적 관측이다.

전문가들이 보는 여성 노동시장의 미래는 대체로 밝다. 우선 노동의 양보다 기술, 창의력 같은 질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경제 구조 자체가 정보화, 소프트웨어화 따라 육체 노동보다는 지적 능력, 미적 감각, 상상력이 중시된다.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경제 구조와 소비 유형으로 바뀌게 되면 단연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고학력화, 여성화, 고령화는 21세기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을 상징하는 핵심어이다. 한국은 결혼한 여성 1인당 평균 출산 자녀수가 1.7명(95년)으로 이미 인력 부족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남성 청년층의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싹든 좋은 노령자와 여성을 포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성개발원의 성별 노동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94년 76.4%에서 2000년 75.6%, 2010년 76.6%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은 94년 47.9%에서 2000년 50.7%, 2010년 55.1%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로 여성의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기존 여성의 재취업 욕구가 증대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도동력층(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거기다 육아 관련 정책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여성들의 퇴출 압력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시사저널 1996년 5월 9일자)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여성 노동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지속되어 왔지만 그 전망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이 이제는 밝혀졌다. 기술은 대대로 그 형성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해 왔으며, 수용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존 성정체성을 강요하는 데 기여해 왔던 것이다. 우리가 통찰해야 할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과연 과거 되풀이되어 왔던 기술과 여성의 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냐 하는 부분이며, '정보화'가 고질적으로 누적이 되어 온 수많은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인가가 궁금한 것이다.

기술의 발달과 여성 노동에 관한 논의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는 가사노동의 자동화에 관한 것이다. 한때 가전기기가 고도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들이는 가사노동의 노력과 시간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기도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여성들의 남은 시간과 노력이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해 돌아갔느냐는 부분이다. 사실상 기계의 도입으로 벌었다고 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은 여성 자신의 몫이 아니라 더 복잡해진 기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돌려졌다. 이 문제를 정보화가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성 노동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실제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했다는 관측도 있고 신문마다 기업들의 여사원 채용 공고를 익숙하게 보게 되지만, 사실상 여성 노동인력은 점점 더 산업예비군화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임금의 격차로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구미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보다도 큰 것으로 조사돼 경제활동에서 성차별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시사주간 슈테른지는 최신호에서 다른 각국의 남녀 임금격차분석기사에서 한국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53.5%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UN통계를 인용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통계가 잡힌 20개국중 방글라데시(42%)를 제외하고 최하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구미 선진국들도 여성임금은 남성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경제활동면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95년 5월 XX일자)

이 임금의 불평등은 많은 부분 '결혼한 남성 노동자는 아내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므로 여성 노동자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한다. 이에 따라 여성은 점차 '역사적 사명을 진' 남성과 경쟁하지 않는 미숙련, 저임금 직종으로 주변화하고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적 구조적 장치로 인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주변화는 물론, 동등한 취업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래 노동의 유연화로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임시직 등의 불안정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메꾸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보여지듯이, 정보화로 인해 여성 노동 문제가 해결된다기 보다는, 최근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주변화하는 노동력과 심화되는 고용 문제가 여성 노동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미래의 여성직으로서 낙관적으로 관측되는 '재택 근무'도, 가사노동의 성역할을 고착화 할 뿐더러 재택 근무의 분업적 특성상 전반적인 노동 과정에 대한 소외와 임시직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편으로 제기되는 것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여성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여성 운동을 발전시키자는 주장이다. PC통신으로 대표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및 기술의 발달이 장애인들에게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 및 생활공간의 확장을 기대하게 하듯이 여성들에게도 그렇게 기여하고 나아가 '일상정치'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가정과 여성성 등 가장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끌어 내어 그것이 가장 정치적인 문제로서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 기인함을 보여주었던 것이 여성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성주의의 기본이라면, 이제 여성들의 일상에 있어 네트워크는 - 생활 공간의 확장 관심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동료들과의 만남, 이야기할 수 있는 '방',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등 그 어떤 매체보다 탁월한 조건을 여성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반여성적인 발언들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네트워크를 실제로 쓸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access)상의 불평등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기대되었던 바와는 달리 그 자체로는 기존의 경제적, 인종적, 지역적 불평등 및 성적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접근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통계상으로 인터넷은 백인과 남성 사용자가 각각 85% 이상이며, PC통신망을 사용하는 여성의 수는 최근 한국의 경우 17%, 일본의 경우 13%에 그치고 있음이 각각 발표되었다.

더군다나 전체 온라인 사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쉽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들의 네트워크의 활용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점은, 문제의 네트워크가 어떤 세력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직시하는 자세와 평등한 네트워크를 위해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제조건들에 대해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네트워크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성차별적 사회화와 편견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한계로 인한 불평등(87),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에게 있어 불리한 비용과 시설 등 access에 있어서의 불평등, 남성 위주의 과학 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성과와 검색 방식에 익숙치 못한 여성의 조건을 배려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에 의한 불평등,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접근의 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네트워크 효용성에 대한 지각력이 부족하여 생기는 불평등, 오프라인 현실사회에서 사회화된 관습이 영향을 끼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의 불평등, 온라인 성희롱 등 많은 네트워크상에서의 많은 불평등한 조건이 여성들의 네트워크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88). 특히 이런 종류의 주제에 대한 논문들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여성을 위한 네트워크 access 여건의 확충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 시점에서 부족하나마 여성운동의 게임지점에 대해 제안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무엇보다 지금의 여성 노동운동 및 문화 운동 등 기존의 여성 운동이 보다 더 투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기서 소위 '정보화'를 통해 더욱 주변화되고 소외될 여성 노동과 여성 문화적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긴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둘째, 테크놀로지 활용에 있어서 보다 여성을 위한 access 경로의 확보와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최근 Feminet 등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

97. 이와 관련해 조혜정(연세대 사회학) 교수는 지난 90년 발표한 <정보자본주의와 여성>이라는 논문에서 유의미한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 한 도시의 국민학생 7학년부터 8학년 사이에 있는 4백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남녀 구분없이 가르치고, 남녀 성비가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남녀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6학년은 관심을 드러내는 남아들이 2배로 늘었고, 9학년에 이르면 80%가 남아아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또 프로그램교육에 드는 비용만을 조사한 것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1백불 이하의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32%가 여학생이었던 데 비해 1천불 이상인 경우 15%로 줄었다. 이 결과는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컴퓨터교육을 위해 배려와 투자면에서 남자편향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남아아이에게는 컴퓨터학원을, 여아이에게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의 음악분야를 가장 많이시키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상당히 흡사하다. (여성신문 96/09/29일자) 즉, 이 사례는 학교 안팎의 사회가 남아들에 대해서는 컴퓨터 교육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여아들에 대해서는 보다 '여성성'에 맞는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실제적인 컴퓨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98. Hoai-An Truong / Members of BAWIT (Bay Area Women in Telecommunications), Gender Issues in Online Communications, 1993.

으로 들었으며, 기존 상업망과 독자적인 여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네트워크에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제적으로 여성들에게 쓸모있는 정보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며 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같은 전반적인 access 확충의 문제이다.

Feminet 논의에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연 여성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실제적으로 쓸모 있는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많은 여성들이 심지어 초보자일지라도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사용할 때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여성 해방을 위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온라인 성상품화, 온라인 성희롱, 검열 등 전반적인 정보운동의 이슈에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분분한 영화 사전심의 철폐와 독자적인 등급제 수립에 있어서 미약하나마 여성들의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검열 철폐와 음란물에 대한 기준 수립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시급하다.

7.4.4.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⁹⁹⁾

(김종서¹⁰⁰⁾)

■ 들어가는 말

나우누리,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사건이나 한총련 CUG 폐쇄사건, 인터넷상의 북한사이트 접속 차단 등은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의 현실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뒤이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내무부가 발표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방침이었는데, 이는 카드 하나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놀라움과 아울러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정보화시대의 도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이르면 일단 막막한 기본이 든다. "정보통신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줄 것을 지식인연대로부터 부탁받은 나 자신도 도대체 정보통신관련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전혀 문외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정보화시대는 도래해 있고 이와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이 표출되기 시작한 이상 법학, 특히 헌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 사례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CUG 폐쇄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한껏 높이고 있는 등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테크노피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현행법 중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관련된 것들, 이른바 정보통신관련법들을 개관하여 그 체계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기엔 향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CUG 폐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 보기로 한다. 즉 컴퓨터통신에 대한 정부의 제한조치에 관하여 그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문제점을 검토한 연후에 최근의 사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이다.

99. 끝부분에 내용 결핍이 있는데, 이것은원문을 그대로 옮겼음을 양해바랍니다.

100.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학

■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담은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은 담화 토론 연설 방송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발표를 뜻하고, 출판은 문서 도화 사진 조각 등 문자와 형상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발표를 뜻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1)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이루는데 불가결하고, (2) 민주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3) 특히 민주정치체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정치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2)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3)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 제21조 제4항).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데, 언론 출판에 대한 제한은 사전제한과 사후통제로 나누어진다. 이 중 사전제한은 상대방에게 사상이나 의견이 도달되기도 전에 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볼 것인가를 당국이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후통제보다 현충 더 유해하다. 사전통제의 전형적인 예는 검열인데, 이에 따라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열이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검열과는 달리 사후통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지므로 그 제한과 규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본권의 규제입법에 관한 합헌성판단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으로 거론되는 원칙들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법익형량이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등이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 불확정개념이나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무효가 된다. 막연하므로 무효(void for vagueness)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표현행위 규제입법에는 최상의 입법기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고 자그만치라도 명확히 할 여지를 남기는 한 위헌무효라고 하여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둘째, 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를 과하는 입법은 자유로운 표현을 질식시키는 사회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것은 자유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덜 제한적인 대체조치(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의 원칙을 표현의 자유에 적용한 것이다(과잉금지의 원칙).

셋째,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 사안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규제입법이 그와 같은 중대한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증책임이 규제당국에게 전가된다는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된다(법익형량의 이론).

넷째,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원칙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은 표현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법률상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이론이지만, 위협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기술적인 증거법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명백이라 함은 표현과 해악의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말하고, 현존이라 함은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위협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악의 발생개연성을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표현행위가 그와 같은 위협을 갖추었을 때에는 곧 이것을 규제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 서 비교형량의 관점을 접목시켜 명백 현존의 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백성, 현존성, 특히 위협성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표현의 사회적 가치가 그 위험성보다 우월할 때에는 당해 표현은 법적으로 시인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컴퓨터 통신에 대한 법적 규제의 태양과 문제점

위에서 서술한 바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표현되는 각종의 게시물 등은 헌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언론 출판"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들은 컴퓨터 통신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컴퓨터 통신의 검열 및 CUG 폐쇄 등 규제와 관련된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규제입법의 한계나 합헌성판단기준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까지 컴퓨터 통신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행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각종 게시물 내용을 문제삼아 실정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것, 둘째, 특정 단체의 CUG 폐쇄, 셋째, 컴퓨터 통신에 대한 검열, 넷째, 인터넷상의 북한관련 사이트(site) 차단 등이다.

- 게시물의 내용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컴퓨터 통신망의 게시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 때문에 형사처벌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1993년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씨가 천리안 게시판에 사노맹 중앙재건위의 입장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어 1,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회비평모임 희망터 회원 이상철씨가 오봉옥의 시 [붉은산 검은피]의 전문, [1994년 김일성 신년사]와 [현 정세의 민족민주운동의 조직 과제] 등을 천리안에 게재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통신망의 게시물 등에 게재되는 내용들은 그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그 내용을 조회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마치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과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게시물은 통신망에 올려지는 것인데다가 비록 그 조회건수도 대부분은 매우 적는데 그치고 있다 하더라도, 성격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책이나 연설, 유인물 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전파하기 위하여 행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망의 게시물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자체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합헌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게시물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유로 한 형사적 제재가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와 같은 사안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을 제한하는 법령 자체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헌법에 합치된다면 이러한 게시물에 사용된 표현의 내용이 그러한 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그런데 통신망에 올려진 표현물의 내용을 이유로 한 형사적 제재는 주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들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와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이 아니라면 문제되는 사안이 과연 동조 소정의 이른바 "이적표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은 누차에 걸쳐서 제기되어 왔지만 1990년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 결정에 따라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역시 금년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한정합헌의 판단을 받았다. 따라서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을 다시 문제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그 적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보안법 적용의 원리

최근에 들어와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군사독재시절보다도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이 제7조의 이적표현이 문제되는 경우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이 때 경찰이나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논리를 보면, 문제되는 표현물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평가나 그 본래의 선의적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기에 사용된 문언을 형식적으로 아니 도식적으로 북한의 주장, 또는 논리반사적으로 북한에 이롭게 될 가능성을 갖는 정부비판적 주장과 직결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집단이든 검찰의 표적이 되기만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극단적인 자의성과 형식논리가 지배하는 법 적용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국가보안법 운용 실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구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 편의적 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이나, 이에 따라 1991년 5월 31일 개정된 법률의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부가한 것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몰이해한 소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의의가 있다면, 국가보안법의 운용은 보다 헌법에 적합하게, 그리고 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제5문)을 우리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위 개정법률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분단된 우리사회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국민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노력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인 목적이 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설사 표현물의 내용이 비록 의형상으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과연 반국가단체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법원은 아직도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동포간에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외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거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앞의 결정의 다수의견에서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면에서 이태을로기적 대결의 종식으로 동서간에 화해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그 동안 북한의 배후지원국으로 우리의 적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과도 국교관계가 정상화되고 국내정치면에서도 남북한 통일이 조속히 성취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제 공개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비록 소수의견에서이긴 하지만 명확히 개진된 바 있다. 앞의 헌법재판소 판정에서 소수의견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된다고 하면서, "남북한의 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서 형성된 여론의 바탕에서 통일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불법집단 내지 반국가단체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소수의견으로 전개된 것에 불과하지만, 대법적인 구도에서 화해와 협동시키고 동포애를 기초로 하는 민족대단결의 사회분위기가 보다 진전되고 있는 추세로 보나 헌법의 평화통일 지향의 이념으로 보나 여전히 무물론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견해의 타당 여부를 쉽게 논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견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게다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개진되었다는 사실은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즉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명제를 근본적인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그 명제 자체의 타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된 이상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3) 컴퓨터 통신 사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¹⁰¹⁾.

우선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표현물의 내용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 내지 그 통치권자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사상을 담고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 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주장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기초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포하는 취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표현물을 제작, 반포, 판매할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와 같은 객관적 요건 이외에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고 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이적목적"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적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행위 자체인 표현물이 이적성인 것과 같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통신에서 문제된 사례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우선 객관적 요건에 관해서는 컴퓨터 통신과 일반 서적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자도서의 예를 보더라도 컴퓨터 통신에 오려진 게시물은 근본적으로 도서와 같은 표현물임은 확실하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의 판단에서는 일반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컴퓨터 통신의 경우 이용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데이터를 취할 수 있으므로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일반 도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반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컴퓨터 통신에 올려진 표현물의 조회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공산당선언의 경우 47회에 그쳤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 위해의 명백한 위험성의 판단에 별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는 어떤 도서가 서점에서 100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적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과 같은 이치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회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즉 소수 이용자에게만 개방되는 곳에 등록되었다는 사

따라서 컴퓨터 통신망에 올려지는 표현 역시 내용에 따라서는 이적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공산당선언 사례처럼 법원에 의하여 이적성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요건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컴퓨터 통신과 일반 도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일반 도서는 본질적으로 한 사람의 사상과 주장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반면, 컴퓨터 통신의 게시물, 특히 공개 게시판에 올려지는 표현의 경우에는 그 표현과 전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려진 사안에 대한 토론을 기본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컴퓨터 통신은 일반적으로 주장이나 선전의 공간이 아니라 토론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론을 목적으로 올리는 표현물을 두고 그 송신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의욕 내지 주어져 있다는 점도 일반 도서와는 구분되는 점이다. 물론 토론의 공간 자체를 선전 선동의 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망에서는 일반 도서와는 달리 다양한 반론이 행해지고 그 반론의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전 선동의 효과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한다면, 이적목적의 인정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한편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상의 표현물의 경우 이러한 이적목적의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가 하는 전파가능성이다. 즉 공산당선언의 판결에서 법원은 "현대철학동호회에는 20만명에 달하는 천리안 일반 가입자가 누구라도

10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접속할 수 있는 '비회원도 다같이'란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산당선언]을 게재한 곳은 당시 47명의 회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개자료실의 문서자료실이었던 점"을 이적목적 없다고 인정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동일한 내용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소수에게만 개방되는 곳에 등록하면 이적목적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이적목적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 위협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 CUG 폐쇄

컴퓨터 통신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또하나의 사례는 CUG의 폐쇄문제이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강제로 폐쇄되는 경우와 통신망 개설 회사측에 의하여 폐쇄되는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강제폐쇄의 경우는 한총련 CUG의 경우와 같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폐쇄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통신회사가 폐쇄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회사측에 의한 경우는 한국통신노동조합 CUG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1)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폐쇄

① 사례 -한총련

서울경찰청은 1996. 8. 30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망(CUG)을 폐쇄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나누우리의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망에 정명기의장(23전남대 총학생회장)등 한총련 간부 4명의 이름으로 게재된 통신물 일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30분경부터 한시간여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852의 22 단우빌딩 내에 있는 (주)나우콤의 PC통신망 '나우누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통신문 내용 검토결과 한총련이 김일성, 김정일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통일이념을 그대로 전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나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정의장(III, 한총련 I), 유병문조국통일위원장(24. 동국대, 한총련 II), 김정호학원주주화구쟁위원장(22. 동아대, 한총련 III), 박병언서총련의장(23. 연세대, 서총련)등 한총련 간부 4명의 신상명세와 게시물 제목을 복사했으며 이 전용통신망을 폐쇄조치했다.

한편 이같은 조치에 대해 나우콤 관계자는 "사법 및 행정당국의 별도 명령 또는 지침없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만으로 'PC통신의 전용공간 강제폐쇄'가 명령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압수수색 결과 통신문 등의 이적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부 등 관계당국에 이 통신망의 폐쇄를 요청하기로 했었다.

경찰의 이런 조치에 대해, 수배중인 한총련 대변인 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박병언씨(22. 연세대 총학생회장)는 3일 박씨가 '서총련'이란 ID로 사용중인 PC통신 '나우누리'의 전용정보통신망(CUG)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29일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서울 지방법원에 냈다.

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안상운 변호사 등을 통해 낸 청구서에서 "통신망은 현행법상 압수가 가능한 물건이 아니다. 통신망을 통한 게시물 복사 등을 통해 압수할 수 있는데도 통신망 자체를 폐쇄토록 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은 통신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압수영장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전화를 범죄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화선을 끊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② 한총련 전용통신망 폐쇄의 법적 평가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병언씨의 준항고에서 적절하게 제기되고 있듯이 통신망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와 실사 압수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게시물 내용의 이적성을 이유로 하여 통신수단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전용통신망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들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압수 수색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형소법 제219조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제215조)에도 준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증거물" 또는 "물건"의 개념은 이 규정으로 보아 반드시 유체물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가장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전용통신망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또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성격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즉 일반적인 물건의 압수나 수색으로 이를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형태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용통신망 역시 폐쇄라는 형식으로 물건을 압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증거물 또는 물건의 개념에 전용통신망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자체는 그다지 큰 중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압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는 당해물건의 압수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형사소송법 제114조와 형사소송규칙 제58조와 제107, 108조의 규정에서 잘 드러난다. 즉 형소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

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 수색영장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필

특히 형사소송규칙 제108조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는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압수 수색 등에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압수 수색의 필요"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압수 수색의 일반적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총련 사건에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한 전용통신망의 폐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전용통신망 폐쇄는, 거기에 게시된 각종의 표현물이 이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확보함으로써 한총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전용통신망의 폐쇄와 범죄사실의 입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이 분명하다. 한총련이 전용통신망에 게시한 표현물이 이적표현이라면, 이적성을 가진 당해 표현물들을 압수하면 그것만으로 범죄의 입증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전용통신망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처음부터 범죄사실의 입증에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수사기관이 전용통신망을 폐쇄한 것은 또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통신공간인 전용통신망을 이적 표현물 게재를 이유로 폐쇄함으로써 수사기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체제비판적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게시물과 그 게시장소인 전용통신망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통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조치는 통신망 운영회사로 하여금 자체검열을 강화하여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적표현 등의 문제표현이 들어 설 여지를 없앴으로써 통신공간상의 토론문화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가 다양한 사상과 정보가 제한없이 유통되고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우월성이 인정된 사상과 의견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정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용통신망의 폐쇄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나누우리의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망에 정명기의장(23. 전남대 총학생회장)등 한총련 간부 4명의 이름으로 게재된 "통신물 일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용통신망 자체는 이와 같은 압수의 대상인 "통신물 일체"에는 처음부터 해당되지도 않는 것이다. 전용통신망의 성격상 그것은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압수물의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압수의 명목으로 폐쇄한 것은 영장의 기재사항 자체를 넘어서 위법한 영장집행으로 보인다.

③ 관련문제 - 정보통신부 장관의 직권폐쇄

한편 이 사안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신망에 올려지는 게시물의 삭제나, 게시물이 올려지는 게시관의 직권폐쇄 등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71조 제5호는 이에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명령 위반은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는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원래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총련의 CUG 폐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법령상이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결국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형벌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그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특정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그 게시물이 올려진 게시관 자체가 폐쇄되거나 CUG의 폐쇄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은 엄연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대하여 일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위법 부당성을 문제삼아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당연히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여 그러한 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그러한 게시물을 올린 자와 이러한 게시물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 일반 정보통신이용자들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이 그러한 통신의 취급 거부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고, 해당 게시관이나 CUG 자체가 폐쇄되거나 특정 이용자의 의견 게시 자체가 거부된다면 게시관의 이용자들이나 특정 이용자는 통신수단 자체를 부인당하므로 결국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부터 살펴 보자.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은 통신의 내용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여 행해진다든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에 따른 엄격한 평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 즉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를 본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제1호를 제외하고는 지나치게 막연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위헌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특정한 통신이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 제53조의 2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항), 그 업무의 하나로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16조의 4는 "위원회가 법 제53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은 전체적인 법체계상으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정요구에 바탕을 두고 행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심의규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에는 지나치게 막연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대표적인 예로 심의규정 제17조 하나만을 본다. 제17조는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이념"은 그 자체가 극도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개념인데다가, "국가의 존엄성"이란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법령에서도 볼 수 없는 용어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있어도 국가의 존엄성이란 말은 없다. 게다가 이를 침해한 내용의 통신도 아니고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심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이 규정이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구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결국 "반국가적 행위"는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것임을 규정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요건을 가지고 표현을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는 그 심의에 따른 동위원회의 시정요구 자체가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의 규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곧바로 그것이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으로 이어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직접 문제삼기 위해서는 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법 제53조에 규정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나 시행령 제16조 제2호 소정의 "반국가적 행위", 제3호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모두가 불확정개념으로서 이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실사 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나름의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당해 통신내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CUG 폐쇄, 당해 이용자의 이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의 비례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된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CUG 폐쇄나 이용금지 등의 명령은 당해 이용자의 게시물, 또는 당해 CUG에 올려진 어떤 게시물도 법 제53조 제2항과 시행령 제16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른바 법 제53조에서 말하는 '불온통신'의 예방, 근절은 당해 게시물 자체만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령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당해 CUG 자체가 법령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거나 아니면 그 CUG에 게시되는 게시물들이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이 법령 위반의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그 이용자가 게시하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법령 위반으로 인정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은 필요 이상의 규제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회사측에 의한 폐쇄

① 사례 - 한국통신 노동조합

이와는 달리 통신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폐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텔이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전용통신망을 폐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피시통신은 1995. 6. 6 자사의 컴퓨터 통신망인 하이텔에서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KTTU' 대화방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한국피시통신은 이날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조계사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 집행간부를 연행한 뒤 오전 11시경부터 갑자기 한국통신 노조의 'KTTU' 대화방을 완전히 폐쇄했다.

한국피시통신은 "공공안녕질서를 해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통신행위 때 사용자 동의없이 대화방을 폐쇄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노조 대화방을 잠정 폐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시통신 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통신쪽이 유덕상 노조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돼온 대화방을 폐쇄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하며 "회사쪽이 이에 굴복한 것은 통신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② 한국통신 노동조합 대화방 폐쇄의 법적 평가

한국피시통신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쇄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는 불온통신의 정의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화방 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폐쇄조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명령도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통신망인 하이텔 이용객들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신망의 이용약관들과 같이 통신망 운영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CUG 등을 폐쇄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특히 통신망 이용약관은 이용자들이 이

용신청을 할 때 이를 읽고 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폐쇄조치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 것, 즉 국가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인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경우에도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혹은 사법상의 일반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권이 가지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근거로 하여 사인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하나인 약관을 근거로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계약내용 자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데 이용약관에 규정된 사유 중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는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하이텔 제16조 및 제20조, 천리안 제34조, 나우누리 제23조).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등이다. 특히 그것이 곧바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의 경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은 회사측의 일방적 판단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용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표현이 이에 반하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2)의 경우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뒷받침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엄격한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이지 약관으로 정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3)의 경우에도 직접 폭력 등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4) 역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확정될 수가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에 의거하여 CUG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 요건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통신이 과거에 적법 절차에 따른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받은 적이 있거나, 그 위법성에 대하여 일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의 명령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통신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건대 한국피시통신이 한국통신 노조의 대화방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관계법령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덕상 노조위원장이 대화방을 통하여 노조의 행동방침 등을 전달한 것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말하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피시통신의 이 조치 이전에 정부에서 조치를 요청해 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것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요청(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상 회사가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검열

앞에서 언급했듯이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검열이란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열의 대상은 출판물, 영화 등 객체화된 표현물이다. 그런데 컴퓨터 통신의 경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검열이란 개념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 통신상의 검열반대운동은 통신상의 게시물 삭제하거나 그 내용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등을 검열의 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역시 검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검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에

우선 검열이란 "국가기관에 의하여"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제한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행위 주체가 국가기관인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통신상의 게시물 삭제나 내용을 이유로 한 제한조치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 등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는 몰라도 한국통신 노조의 경우처럼 사인인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것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성방식(정보통신부장관의 위촉), 직무의 성격(특히 불건전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이 업무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이나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부장관에 소속되어 있는 일종의 행정위원회로서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수행하는 심의 등은 적어도 주체의 측면에서는 국가검열의 예에 속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열이란 사상이나 의견이 "외부에 공표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그 공표를 억제하는 제도, 즉 사전제한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게시물의 삭제, 내용을 이유로 한 대화방 폐쇄 등은 이미 통신상에 공표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제한인 검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통신이용자가 어떤 사상을 통신상에서 진술하고 그것이 통신망에 등록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개제되지만, 등록되기 이전에 심사가 되어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몰라도 등록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유로 하여 어떤 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검열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통신망 운영회사측에서는 게시물의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에 의한 검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통신상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우누리에 '섹스강국론' '무장공비사건 조작가능성 높다' 등의 글을 올린 김모씨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년간 이용금지 조치를 나우누리에 요청한 경우와 같이, 이미 공표된 게시물의 내용을 이유로 그 게시자의 게시물 등록을 거부하도록 요청(명령)하는 등의 조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등록 거부 자체는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행정기관의 거부할 수 없는 요청(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통신망에서 본래적 의미의 검열, 즉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일반적으로 통신상의 검열은 통신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통신회사의 자체 검열은 국가기관의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망에 게시되는 표현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제시하는 논리는 사후로도 통신회사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게시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되는 일이 계속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반국가적 행위", "미풍양속을 해함" 등의 이유로 게시물 등록자의 이용금지를 요청해 오는 일이 이어지게 되면, 통신회사는 그런 사안에서 국가기관이 내린 판단을 내면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통신회사의 존립 자체가 국가기관의 판단에 좌우되는 현실(허가취소, 형사처벌 등)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통신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내용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의심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판단기준이 통신 회사의 판단기준으로 내면화되면 이미 회사의 검열과 국가기관의 검열을 구분하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즉 외형상으로는 회사의 등록 거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의 검열에 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 통신의 내용을 이유로 하여 이루어지는 등록 거부하는 그것이 국가에 의한 것이든, 회사에 의한 것이든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회사는 이미 등록되어 이용자들이 열람, 조회하고 있는 게시물을 그 내용을 이유로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 사후적으로 삭제할 수는 있지만, 게시물의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등록 거부 자체만으로 이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7.4.5. 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허인정¹⁰²)

■ 글을 시작하며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분유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구속과 그 사실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책임 여부, 이양호 장군의 군사비밀 누출을 계기로 표출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군사기밀 보도에 대한 정부의 달갑지 않은 시선들은 우리가 현재 흔히 보고 듣고 있는 뉴스거리들이다. 왜 언론사는 그러한 기밀(?)을 보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러한 사실이 정부의 기밀사항이라면 어느 한도까지 보도되어야 하는 것인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자에게 알렸다는 사실 만으로 공무원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또 그러한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또 그에 대한 언론사와 국민 일반의 대처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즘 들어 흔히 듣고 있는 알 권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알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정보공개법을 어떤 방향으로 입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도 형성되어있지 못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알권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보공개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보겠다.

102. 서울대 신문학과 석사과정

■ 기존문헌 검토

국민의 '알권리'가 새로운 인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논의와 연구도 최근들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4년 강경근과 1985년 박근성의 논문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알권리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인 정보공개법에 관한 연구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연구논문은 대개 독일과 미국에서 주장되는 알권리에 대한 이념적 고찰과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주된 논점이었으며 그 결과 알권리는 국가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로 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에 대한 연구는 한동안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다가 1989년 이후 한국공법학회와 행정학회가 정보공개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행해졌다. 특히 1990년대는 몇 편 안되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에 대한 관심 속에서 논문들이 다시 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강영균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1992년, 93년 김용균, 황창연 등에 의해 한국적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심들은 법학, 행정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알권리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또 알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우리의 경우 어떤 권리에 근거하여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법학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이 권리를 제도를 통해 실현하려는 움직임에서는 행정학 쪽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논문들은 모두 합해 심어편에 머무를 정도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특히 우리나라에 정보공개법이 제정전인 한계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머물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알권리를 단순히 국가나 언론에 대해, 혹은 개인의 자기 정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적 정보공개제도를 단순히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으로 인식하여 정보를 행정정보로 축소, 해석하였고 한국적 정보공개제도도 일본의 지방단체조례를 본떠 제언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행정학 쪽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논문들의 또 다른 한계 중 하나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국가나 언론에 대한 것으로 한정지어 생각함에 따라 알권리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상정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막대한 양에 달하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개인의 인식 없이 누설될 경우 심대한 법의 침해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자신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가졌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한 듯 싶다. 즉 진정한 프라이버시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식적으로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을 배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알권리의 명확한 개념작업과 그 한계를 밝혀냄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계는 기존의 연구들이 법학과 행정학 쪽에서 주로 행해져오며 따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헌법에서도 나타난 말하는 자유, 듣는 자유인 언론, 표현의 자유는 실제로 알권리를 전제한 상태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정보 없이는 어떤 현실에 대한 판단이나 말할 자유를 가졌다고 말하기 힘들다. 또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국가나 언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기업이 국가와 대등한 법적 위치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 대한 알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 특히 현대와 같이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때에 알권리는 국민 개개인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도 알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며, 현재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국민에게 중요한 기업정보는 실속 비밀이라 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권리와 법은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물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법과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주장되는 알권리와 이를 실체화하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에 대한 알권리는 기업의 사회적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법적으로 사인대 사인의 관계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무제한적인 알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보공개법이 제정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분석한 경우도 매우 드물다. 그러나 곧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알권리의 개념규정과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기업비밀에 대해 어떤 정도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 기업비밀도 기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기 보다는 기업비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과 범주화를 통해서 최대한 상호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입법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비밀의 명확한 한계와 범주화에 관한 논문 또한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 알권리의 이론적 근거와 법제

- 알권리의 개념

알권리(the right to know)란 말 그대로 개인이 자신을 둘러 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또 기술과 정보의 발달에 따른 지구 생활화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찾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알권리는 개인의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새로운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권리는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무엇에 대한 알권리인지, 알권리가 인간의 새로운 인권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또 어느 범위까지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매우 불명확한 상태¹⁰³다. 모든 나라의 헌법적 조항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이 모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 국가 혹은 한 사회의 다른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또 국민의 정부에 대한 혹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생활권이 넓어짐에 따라 이 알권리가 새로운 인권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결과 알권리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나라마다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일찍이 매디슨(Madison, 1981, 28-29쪽)과 같은 이는

“국민의 정보(popular information)가 없고 정보를 얻을 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의 정부(popular government)란 기망연극의 서장이거나 비극의 서장 또는 그 양자이다. 지식은 언제나 무지를 지배하기 마련이다. 스스로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국민은 지식이 주는 힘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국민의 정부(popular government)를 위한 국민의 정보(popular inform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알권리의 중요성을 간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도 국민의 알권리란, 법적인 권리로서의 국민의 알권리가 아니라 단지 추상적인 정치적 권리로서만 인식하고 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알권리에 대한 인식은 소극적 인식과 적극적 인식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알권리를 ‘표현을 받는 자유’와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문홍주, 1987, 273쪽),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허영, 1988, 273쪽)라고 하여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도 하고, 그에 반해 알권리를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보고 듣고 읽을(小林曉報, 1976, 77쪽-94쪽) 자유와 권리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개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파악하기도 하는(안용교, 1975, 76쪽) 입장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해석들에 의해 알권리는 구체적으로 자유권적 정보수집권과 청구권적 정보수집권을 총괄하여 ‘광의의 알권리’라고 불리워지거나(石村善治, 1981, 107쪽),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의 내포로 규정하기도 한다(David Mitchell Ivester, 1977).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어지는 알권리에 대한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제 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인권선언 제 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 및 사상을 구하고 받으며 또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에는 정보를 구하고 전달할 권리와 함께 ‘정보를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현대적 민주주의에 수용되어진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Pieter N. Drost, 1965, 32-38쪽)

이러한 인권선언 제 9조에 의거하여 각국은 헌법에 알권리를 명문화시키거나 혹은 헌법해석에 의해 알권리는 전제하고 실정법을 만들어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권리란 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주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에 따라 위긴즈(Wiggins, 1964, 3-4쪽)는 국민의 알 권리를 ① 정보를 입수하는 권리, ② 사전억제나 제한없이 인쇄 또는 방송하는 권리, ③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인쇄 또는 방송하는 권리, ④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자료에 접근하는 권리, ⑤ 위헌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정부나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시민에 의하여 방해됨이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권리의 다섯가지 영역을 포괄한다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듯 알 권리는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사상표현의 자유, 정보전달의 자유,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등을 모두 포함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로 축소개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김동철, 1988, 6쪽).

그렇다면 알권리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행사되어질 수 있을까? 이 역시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았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알권리를 개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는 견해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보청구권, 즉 [커뮤니케이션 일반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가 국민일반인 특수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 있어서만] 성립한다고 보는 의견이다. [요컨대, 알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민과 정부, 국민과 매스미디어 간에 있어서 성립하는 개념]이라는 주장이다(清水英夫, 1978, 15-6쪽). 이러한 주장은 결국 기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는 물론 국가가 가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는 핵심적 장면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 있어서 역시 경시될 수 없는 개인권으로서의 알권리(芦部信喜, 1977, 165쪽) 또는 협의의 존엄권,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알 권리(김철수, 1988, p.317)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만큼 기업과 개인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해졌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인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알 권리가 국민과 정부, 혹은 국민과 매스미디어 간의 관계로만 파악하는 의견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알권리의 목적에는 첫 번째 견해가 더 적

합하다 하겠다.

따라서 알권리는 국가와 국민, 혹은 국민과 매스미디어 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소비자이자 노동자이며, 정보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알권리의 성립 배경 및 한국, 미국, 일본의 헌법적 근거

알권리 또는 정보의 자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세기 후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1766년 헌법의 일부인 출판자유법(Freedom of the Press Act)에서 공문서의 공개원칙을 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다¹⁰³. 또한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장전 제 15조도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행정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알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선언하였다(木木彬太郎, 1966, 276-79쪽). 미국에서도 건국초 헌법제정자들 사이에 민주사회에 있어서 알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수정헌법 제 1조의 채택 당시 알 권리를 포함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Ivester, 1977, 120-134쪽 : Emerson, 1977, 754-55쪽). 그러나 알 권리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각국에서 법제도로 정비되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의 제3제국 및 다른 전체주의국가들의 인권유린은 범세계적인 인권의식을 고취시켰다. 특히 나치스 체제하에서 히틀러의 전쟁수행과 수백만에 달하는 인명의 조직적인 학살이 가능했던 것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 대신에 일방적인 선전과 허위가 난무했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무지와 왜곡된 정보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UN 은 1946년 12월 14일, 총회의 결의안에서 [정보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UN 이 존중하고자 하는 모든 자유의 시금석이 다]라고 만장일치로 선언하였다(Diesbach, 1979, 91-94쪽). 그 후 2년뒤인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여 인권의 국제화에 이바지 하였는데, 동선언 제 19조에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보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규정¹⁰⁴ 하였다. 나치스 시대의 외국신문 잡지의 구독금지, 특정방송의 청취금지 또는 금서목록의 작성 등 탄압에 시달렸던 서독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9년 서독기본법 제 5조 1항에서 알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Hesse, 1984, 151-2쪽).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권리의 전제인 동시에 민주제헌리에 기초를 둔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각국 출판법상 관청의 정보제공의무로서 법제화 되어있다(石村善治, 1969, 59쪽). 영국에서는 1889년 공무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1889)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1911년, 1920년 및 1939년 공무비밀법(Official Secrets Acts, 1911, 1920, 1939)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동법 제 2조는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영국의 전통적인 비밀주의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는데, 1968년 Fulton 보고서에서 영국정부와 행정에 있어서의 공개성 결여가 지적된 이래, 1977년과 1979년 사이에 4개의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1988년 1월에 공무비밀법 제 2조를 개정하려는 법안(The Shepherd bill)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 지방자치단체(정보접근)법(Local Government Access to Information Act)이 1985년에 제정되어 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Birkinshaw, supra note 4, 77-78쪽, 84-89쪽, 91쪽, 222쪽). 이같은 영국의 비밀주의전통을 이어받은 영연방국가들도 최근에는 정보 자유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는데, 캐나다의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뉴질랜드의 공무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 등이 모두 1982년에 제정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1) 미국의 알 권리에 대한 성립배경과 헌법적 근거

국민의 알 권리 개념은 언론자유가 본질상 추상적이고 무형적이며 정치적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침해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도출된 이익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서정우, 1992, 5쪽).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란 용어는 1738년 영국의 토리당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윈드햄 경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고,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그 당시 AP 통신사의 대표였던 켄트 쿠퍼였다. 언론인 쿠퍼는 1945년 1월 뉴욕의 한 강연회에서 “시민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시되는 뉴스에 접할 권리를 갖고 있다. 알 권리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어느 나라이건 정치적 자유란 존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있다(O'Brien, 1981, 12-3쪽).

미국에 있어 1950년대는 ‘알 권리의 운동’이 언론단체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전개된 연대로서 평가되는데 정부에 대하여 정보의 자유화를 전국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정부에 의해서 자행되는 비밀지정이나 취재거부 사례들을 수집하고 비판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최초의 저서는 크로스(Cross, 1953)에 의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책인데 이 책은 자치사회의 시민은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항들을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쿠퍼(Cooper, 1956) 역시 [알권리]라는 책을 출간하여 민주사회의 국민은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을 때에만 주권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국민이 정보에 입각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에 있어 정보공개법의 입법화를 위해 힘

103. 현재 스웨덴에 있어서 알권리와 관련된 법률들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출판자유법, 1980년의 비밀법(Secrecy Act), 그리고 1973년의 데이터법(Data Act) 등이다. 관청에 의하여 문서의 공개가 거부된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도 저렴하고 간편하다.

104. Art. 19 UN Declaration :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했던 것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모스(John Moss)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위원장으로 한 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정부정보의 관리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APA)이 연방정부 각 기관들에 의해서 공중에 알려야 할 각종 정부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방패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여론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알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1950년부터 국내뉴스통제에 반대하여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다]는 구호를 내걸고 보다 광범위한 국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Open Meeting laws]의 제정이었다¹⁰⁵.

이러한 알권리의 미국에서는 헌법상 근거로는 표현의 자유(수정 제1조)를 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함께 국민주권원리를 결부시켜 파악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Alexander Meiklejohn 은 수정 제 1조를 고립된 규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헌법전문 제 1조 2항, 수정헌법 제 10조, 그리고 제 1조 6항과 결부된 것으로서 전헌법구조상 필수적인 부분으로 파악하였다(Alexander Meiklejohn, 1961, 253쪽). 이러한 Meiklejohn의 견해를 기초로 하여 Thomas L. Emerson은 주권자인 국민이 실질적인 국민의 지배 내지 자기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요청을 실현하는 헌법상의 보장이 제구성된 표현의 자유-표현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받는 자유도 포함하는에 관한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다(Thomas I. Emerson, 1976). 한편 판례도 수정 헌법 제 1조를 근거로 하여 1965년 Lamont v. Postmaster General 사건 ((381 U. S. 301 (1965)))에서 소극적 알 권리인 정보수령권을 명백하게 인정한 이래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광범하게 정보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 제 1조를 근거로 한 적극적 알 권리, 즉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1980년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사건 ((448 U. S. 555 (1980))) 이후부터는 한정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

(2) 일본의 알권리에 대한 성립배경과 헌법상 근거

일본에서는 1969년부터 알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행해졌으며¹⁰⁶ 이른바 [외무성비밀누설] 사건(1972)과 [록히드] 사건 이후 여러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법요강]을 발표하고, 정부에서도 1980년에 [정보제공에 관한 개선배치등에 관하여]라는 閣議了解를 공표하였다(圓谷勝男, 1988, 270쪽 ; 研究会, 1972, 28쪽). 아직 국가의 정보공개입법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62년부터 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실시 중에 있으며 올해 있었던 선거의 자민당 공약으로 정보공개법이 들어있었다.

알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일본에서도 역시 명문의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알권리란 헌법상 기초가 없는 정치적 slogan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일본헌법 제 21조 1항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오로지 표현하는 자유로만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국가에서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 자유가 포괄하는 정치적 요소를 무시한 까닭이었다.(김철수, 1989) 그러나 최근에 알권리는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인 발현형태로 파악하면서 그 법률적 근거를 찾고 있다. (?부신회, 1986). 나아가 이 견해는 표현의 자유에는 '자기표현'과 '자유'라는 2개의 가치가 내재해 있는데, 알권리의 관점에서 이 가치를 파악하면 결국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참정권적, 사회권적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1)국민주권원리 또는 민주주의 원칙(전문, 제1조, 제15조 2항), 2) 표현의 자유 (제21조), 3) 인격형성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제13조), 4) 생존권(제9조, 제 25조, 제 26조), 5) 학문의 자유(제 23 단 등)를 종합하여 알권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오평강홍, 1991). 특히 일본헌법 제 13조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경상에서 최대 존중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주장되는 알권리는 개인의 자기충족이나 자유로운 인격형성을 위한 개인적 가치를 부각시켜 방해받지 않고 보고, 듣고, 읽을 자유와 권리가 강조된다. '악덕의 영광'(惡徳の榮光) 사건에서 표명된 포천재판관의 반대이견도 표현의 자유와 함께 여기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¹⁰⁷.

105. [open meeting laws]란 공중에 주, 군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을 말한다. 결국 모스위원회는 자신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의도했던 정부측의 의견을 뒤엎어 정부정보를 공개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입법을 건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1966년에 제정되어 1974년, 1976년 및 1986년에 걸쳐 개정되었고, 1976년에는 연방정부기관의 회의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도 제정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충족시켜 주고 있다. (C.S. Steinberg supra note 12, at 21-25, 266-74. 이 법은 5 U.S.C. § 552 b 의 Open Meetings란 표제하에 1976년 9월 13일 제정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연방정부의 기능을 보호하면서도 연방정부의 결정절차(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Federal Government)를 일반 공중에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법의 내용은 ① 정부기관 및 의회 위원회의 회의의 공개(적어도 일주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주제, 공개여부 등을 공지) ② 공개원칙에 대한 예외 (국가안보, 외교사항, 기관내부의 인사규칙, 법률로 규정한 예외사항, 개인의 프라이버시, 수사기록 등), ③ 비공개회의의 절차, 기록보존, ④ 구제절차, ⑤ 연방의회회의의 정기보고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106. 이미 1958년에 일본의 지방재판소(대판, 동경지재)에서 알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승인하였으나 일반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1969년 최고재판소가 다룬 [악덕의 영광] 사건과 [박다역 TV필름제공명령] 사건에서 알권리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07. 일본최고재판소의 포천재판관은 "헌법 제 21조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 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타자에의 전달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읽고, 듣고 또 보는 자유를 뺀 표현의 자유는

(3) 우리나라의 알 권리에 대한 성립배경과 헌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알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 혹은 의회의 조직적인 활동이나 캠페인 등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1964년에 [보고, 듣고, 읽을 권리]에 관하여 언급한 논문(한상범, 1964)이 있으며, 1968년의 동양통신필화사건도 국가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이병린, 1968, 75-76쪽), 197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알권리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1980년에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언론기관에 대하여 정보청구권(동법 제 6조)을 인정하였으나, 당시의 언론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조항은 장식적인 규정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언론기관에 의한 정보청구권만을 인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1986년 중반에 확산된 KBS TV 시청료 거부운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계속된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고(문명호, 1987, 271-73쪽), 1987년 9월의 이른바 [월간조선, 신동아사태]는 다시 한번 국가이익과 알권리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1987년 12월 한국공법학회에서는 [미래정보화 사회에 대한 공법적 대응]이라는 주제하에 정보기본법 이른바의 발전과 입법자료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특히 1989년 5월 26일 [미래정보화 사회의 공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공법학회가 개최한 국제학술회에서 [정보공개법 제정의 방향]이라는 논문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法律新聞, 1989, 10쪽), 이것은 정보공개입법에 대한 학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학계의 관심은 결국 1989년 9월 4일자 헌법재판소 선고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알 권리를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선고는 다음과 같다¹⁰⁸.

"우리나라는 헌법 제 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 19조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거나 입수 또는 전달할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여 소위 [알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알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의 공개(제 50조 제 1항), 재판의 공개(제 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알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 1조 및 제 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위한 입증자료 사용하고자 문서의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불응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 [알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청구인이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보유 정조의 개시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 21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보 및 사상을 구하고 이를 입수하는 자유는 출판, 배포 등의 자유와 표리일체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독 표현의 자유의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갖는 행복추구의 권리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요컨대 문예작품을 감상하고 그 가치를 향유하는 자유는 출판, 배포 등의 자유와 함께 충분히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일본최고재판소 소화 44년 10월 15일, 형집 23권 10호, p.1239)

108. 이외에도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 판례(선고 90, 헌마 133), 1992년 2월 25일 판례(선고 89, 헌가 104)와 1989년 10월 24일의 대법원 판례(선고 88누, 9312), 1992년 6월 23일 대법원 판례 (선고 92추, 17)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판례를 통하여 알 권리가 갖는 법률적 측면을 살펴보면, 우선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에 의한 국정참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이나 행정, 혹은 국가가 소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수집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위의 결정문 중 서류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공문서규정 제 36조 2항을 근거로 해서 곧바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법률상 공개가 재량권으로 되어 있어 공개를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를 곧바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론의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의 결정문은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알권리를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고, 그 밖에 국민주권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알권리와 관련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같이 알권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알권리를 이 판결문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첫째로, 언론, 출판의 자유는 표현하는 자유와 동시에 표현을 받는 자유 즉, '알권리'도 포함한다고 하여 알권리의 근거를 헌법 제 21조에서 구하는 견해가 있으며 둘째, 일본의 경우와 같이 1)국민주권원리(헌법전문, 제1조2항), 2)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제10조), 3) 표현의 자유(제21조), 4) 사회적 기본권(제31조, 제 34조 1항) 등을 종합하여 알권리의 근거로 보는 견해도 있다(안용교, 1975).

첫 번째 견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해석한 결과 도출된 것이며 둘째 견해는 각국의 이론적 근거를 종합하여 도출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견해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견해는 국민이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서적을 읽고 tape를 듣고 computer를 보는 자유와 권리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정보의 자유추진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두 번째의 견해는 알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로 요청되는 필요성의 문제와 알권리의 헌법상 근거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알권리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에 포함하여 설명할 수도, 또한 기타 관련규정을 열거함에 의해서만도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알 권리는 인간이 인격자로서 존엄권을 가지기 위하여 지식을 가지고 인격형성을 위한 독서를 하고 학습의 권리를 포함하는, 자유권으로서 보다는 인간존엄권 내지는 행복추구권의 내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말할 권리 등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정보공개법 시안에 대한 분석

정부가 발표한 정보공개법안은 정보공개요구권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한데 특징이 있다. 총무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요구권을 실제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정보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불복, 구제절차를 상세히 규정, 소송법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신청이 거부될 경우 신청자는 해당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공개가 거부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정치적, 행정적으로도 정책의 투명성 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정보요구권을 통해서 국민이 행정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정책입안 및 집행의 전과정에 이르는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의 재산과 이익에 관련된 정부정책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 공무원들도 정책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책수립 및 집행에 참여한 전공무원의 서명날인과 날짜까지 명시,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공무원의 책임규명이 가능하다. 정책의 투명성은 물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정보주권을 뒷받침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 가운데 '비밀사항', '의사결정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 내용이 모호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게 잡고 있어 입법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정부의 시안에 대한 각 단체의 안을 각각 비교, 검토하고 또한 정부시안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의견들이 제시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정부시안에 대한 4단체의 案 비교

	정부시안	행정연구안	공법학회	경실련	민주당
청구권자	모든 국민,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모든 국민,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모든 국민	국민, 외국인은 국내에 1년이상 거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국민, 국내에 3년이상 거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공개기관	행정, 입법, 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단체(행정기관)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행정기관	국가, 공공단체 등 모든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 연구기관, 입법부, 사법부, 기타 정부의 의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 연구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위원회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정보자유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정보민원감찰관

위의 표에서는 크게 정부시안에 대해 3항목으로 나누어 4단체의 입장과 비교하여 보았다. 우선 청구권자에 대해서 정부시안은 모든 국민을, 그리고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각 단체가 이에 찬성하였다. 다만 국민의 개념에 법인 등 등록단체도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와 외국인의 거주기간 제한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공개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시안에 대해 경실련과 민주당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 연구기관 등도 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정보공개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주관하는 위원회에 대한 명칭은 각 단체가 모두 달랐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정부의 시안에 나타난 정보공개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불명확하므로 최대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정부시안에 대한 법학자의 분석 검토

	홍준형	유승삼	성낙인	김만기	강경근
청구권자 (내국인외의 규정여부)		[국민의 개념에 법인과 등록단체 포함.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가능규정	모든 국민, 법인도 포함.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 적용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 외국인의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	청구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음
정보공개 의무기관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예를 모두 들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국책 연구소 등	행정부외에 사법부와 입법부도 포함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기관과 공공단체	국회나 법원의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강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모든 것. 법제정 이전 정보도 포함	공공단체가 처리하는 일체의 기록물의 공개		매체에 기록된 모든 사항 포함
비공개 사유, 대상	정부시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서 슬피어 있음.	사적으로 작성한 문건, 직무관계없이 취득한 정보, 단순한 메모는 정보공개에서 제외	국가기밀사항이더라도 국회의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와 대 정부 질문 등의 경우에 한정적 공개 가능	캐나다 같이 적용제외사항들을 '명령적 적용제외'와 '계량적 적용제외'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함이 운용에 편리	공개가 원칙, 비공개 정보는 최소화시켜 열거해야함
절차 소요기간	정보공개제도의 본질적 요구의 하나인 신속성의 요점에 따라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함			정보공개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비추어 정보공개 연장시한을 10일씩 2번으로 단축해야함	
공개방법	공공통신망을 통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을 허락				
정보공개 위원회	정부시안은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함	정보공개 심판위원회 제도가 적당	독립된 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에 각기 설치.	정보공개고속처리관의 용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함
구제절차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 120-150일 정도 걸림-정보의 신속성에 반함			불복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기간 3개월은 단축되어야 함	

위의 표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시안에 대한 5인의 비판과 입장을 크게 8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청구권자에 대한 논의가 그 첫째로, 정부 시안은 청구권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에 법인과 등록 단체도 포함시켜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도 거주기간 제한을 철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결국 청구주체가 누구이든, 그리고 그 목적·무엇이든지간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는 기존 정부시안에 구체적인 공공기관, 특히 정부와 핵심적 연관을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까지 그 정보 공개의 폭을 확장시켜야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우리와 같이 행정의 비밀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는 모든 공적 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

셋째로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정보'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개방법과 관련하여 정보의 복사나 열람 이외에 공공통신망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도 허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비공개 대상과 그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정부시안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서술되어 있어, 자칫 정보비공개에 합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는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며, 비공개 정보는 특정화시켜 열거함이 타당하겠다. 특히 국가 기밀사항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 기밀의 합법성을 따져 한정적 공개를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에 소요되는 절차소요기간과 정보공개위원회, 구제절차 등의 사안이다. 현재 정부시안에 따른 절차소요기간과 구제절차는 신속성을 요구하는 정보의 속성상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정보청구자의 권익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증대하는 정보공개위원회도 정부로부터 최대한 독립된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쟁점사항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국익에 의한 '비공개 사항' 에 대한 논의

① 국익의 개념

정부시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이나 국방, 외교분야 기밀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곤 정부의 모든 정보를 국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익에 의한 비공개는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실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익이란 개념이 물론 [국가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은 불가침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는 개념이기 아니라는 데 논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국가적 이익이란 결국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이익은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익이란 개념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적 이익이란 개념은 본래 16, 17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근대민족국가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왕의 의사나 왕실의 이익, 왕조의 이익같은 명분이 더이상 힘을 가질 수 없게 되면서부터 그에 대체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독립 이후 정치가들이 주로 그 말을 사용해 온 것으로 되어있다. 국가적 이익이란 그런 점에서 비교적 근대적인 개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뜻으로 주로 대외적이고 외교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국익이 상대적인 개념이었는데 대해서 레이몽 아롱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적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개개 국가의 이익은 저마다의 조건과 맥락 속에서 개별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국가내부에 있어서도 국가이익의 내용에 관해 일반적인 합의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적 이익이란 영어로 national interests 이지만 national 이란 말이 [국가적]이란 뜻과 함께 [국민적]이란 뜻도 지니고 있으므로 national interests 란 [국가적 이익]도 되지만 [국민적 이익]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이익과 국민적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에 다른 가치체계나 이익을 추구하는 국내의 여러 계층이나 이익단체, 정파 등이 국익에 관해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충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로즈노도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국가를 위해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치체계가 다른 여러 집단에 따라 의견이나 주장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란 갖가지 상충하는 이익을 가진 수많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무엇이 국익인가에 관해 애써 통일적인 의견을 얻고자 한다면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모든 관계 집단으로 하여금 저마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여 그것을 조절함으로써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J. 프랑켈은 [국익이란 이기적과 이타적, 단기적 관심과 장기적 관심, 적극론과 소극론, 전통과 혁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등과 같은 여러가지의 양극 사이에서 어느것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바람직한 국익이 무엇인가는 그 모든 경우에 이분법에 의하지 않고 양극 간에 산재하는 점들 중에서 경험적인 지표에 따라 어떤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Joseph Frankel, 앞의 논문))

그는 결국 무엇이 국익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갖가지 상충하는 의견을 조절함으로써 얻어진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 로즈노도 국가에는 많은 이익집단이 존재하며 국가를 위해서 가장 이익이 되는 대외정책이나 행동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수많은 대립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익이란 결국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선택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국가이익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 없는 개념이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109).

따라서 국익이란 결국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한 나라의 정보를 단순히 국익의 침해 여부에 따라 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그 정보의 비밀 여부를 감시할 없이 일정 법률 체계하에서 비밀로 묶여져 있는 정보 모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보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정보의 시안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되어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는 최소한으로 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타난 비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새로운 내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②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타난 비밀의 범위와 미국의 예

<헌결 168>과 <헌결 171>

군사기밀보호법 제 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주문 : [군사기밀보호법(1972.12.26 법률 제 2387호) 제 6조, 제 7조, 제 10조는 같은 법 제 2조제 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불만문의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이유: 군사상의 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행위, 탐지, 수집한 군사상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 그리고 우연히 군사상의 비밀을 취득하거나 점유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제 6조, 제 7조, 제 10조의 규정내용중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개념이 구체적 기준이 없어 애매하다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군사기밀보호법 소정의 군사기밀의 개념 및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무효인 경우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면이 매우 크므로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가능한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비공지의 사실로서 관계기관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표시 또는 고지된 군사관련 사항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자체가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지닌 비공지의 사실에 한하는 것이라고 한정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의 헌법재판소 판결 주문은,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기밀의 경우 적용되는 언론자유 침해는 국익을 위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관료들이 국익을 이유로 해서 언론기관의 보도를 억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일도 아니고 미국을 비롯하여 외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온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사기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그 대립이 더욱 첨예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언론상황에서는 국가세력을 감히 대적하여 이런 비밀을 신문지상에 발표하려는 언론사들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과연 모든 국가적 비밀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언론과 국가간의 대립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상황에 있는 국가들에서 빈번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 국익과 관련한 보도에 있어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이 외교나 안보 등과 관련하여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입수해서 공개 보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맹원순, [한국언론법제론] 1993))

이러한 예로서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도의 자유가 가장 예리한 대립을 보인 대표적인 사건이 1971년 미국에서 있었던 이른바 국방성 비밀문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미 국방성이 작성해서 비밀문서로 지정된 월남전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수의 신문들이 은밀히 입수해서 보도, 공개한데서 벌어진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국방성은 정부가 공식으로 극비문서로 지정된 비밀문서를 신문들이 공개한 것은 분명히 국익에 해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처음 그 비밀문서를 공개한 [뉴욕타임즈]는 오히려 그 비밀문서를 공개해서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국익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는 그 비밀문서를 공개함에 앞서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뒤 3개월간에 걸친 작업으로, 비밀이라고 지정되었어도 실질적으로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기록들 중에서 공개할만한 것들만을 추려서 1971년 6월 13일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뉴욕타임즈]의 연재가 시작되자 비밀로 지정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방침을 근거로 국방성 비밀문서의 공개가 [국가의 이익과 안전에 대해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 ' 것'이라고 주장하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에 신문기사의 게재중지를 요구하는 중지명령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에 대해 법원에서는 그 기사의 일시적인 게재중지는 인정했으나 항구적인 게재중지를 요구한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미국헌법 수정 제

109. Ibid.

1조는 국민이 그들의 정부와 그 행동에 관해 자유로이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설사 그런 정보가 정부에 불리한 것일지라도 신문은 그러한 정보를 보도해서 국민에게 알릴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110.

뉴욕타임즈는 다시 그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하에 있어서 보도기관의 기본적인 책임은 국민이 스스로 선임한 정부의 기능과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타임즈는 국민에게 알릴 것을 알리는 것이 국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또 타임즈는 문제가 된 문서의 공개로 행여 또 한사람의 미군병사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지거나 미국의 안전이나 세계의 평화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는다면 그 공개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임즈는 문제의 비밀문서 속에 있는 기록은 대부분 역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비밀지정의 기준이 지극히 막연하고 애매하여 정부가 비밀이라고 지정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의미의 비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관료들이 비밀지정권을 멋대로 남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111].

연방대법원은 그 사건을 심리한 결과 6대 3으로 [뉴욕 타임즈] 등 신문의 주장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 판결은 무엇이 국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정부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함으로써 정부의 국익우선론에 대해 신문에 의한 보도의 자유에 승리를 안겨 준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판결은 보도의 자유와 국익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밀주의, 비밀지정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제시한 점에서 크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판결은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분명 [국익]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112).

물론 외교나 국방, 안보에 관련된 국가의 비밀은 비록 언론기관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권력자나 관료들이 비밀지정권을 남용해서 그들의 비리나 부정, 실책 혹은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국가의 비밀일 수 없는 것까지 비밀로 지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점에 있을 것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이러한 일이 있은후 뉴욕 타임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정부의 비밀지정권 남용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요구하여 그 결과 정부가 국가기밀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많은 정보를 국민이 모르게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히 그 비밀의 양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113).

- '비밀'의 새로운 개념 규정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정책결정이 국민의 의사에 기할 것을 요구하므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고, 공무는 국민에 의한 부당한 감시와 공공적 토론에 비판 또는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의하면 국정의 공개 내지 정보공개는 원칙은 불가피한 원칙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기초로 하는 민주정체에 있어서 국정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될 것을 요하고 그 예외인 국가비밀은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드워드 윌슨은 19세기 말에 "통치에 관한 사항에는 정당한 프라이버시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통치의 과정이 순수하고 바른 것이어야 한다면 통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까지 주장하였다114).

말할 것도 없이 비밀의 확대는 민주적 통치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다. 비밀의 확대는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고 비판할 기회를 좁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비밀주의는 국가의 정책에 관하여 토론하는 국민의 권리를 질식시키고 민주주의의 프로세스를 파괴한다. 따라서 단지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들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밀로 분류된 사항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정보접근으로부터 배제되어야만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비밀의 4가지 하위 개념115)과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알권리의 한계와 범위를 짐작해보겠다.

① 비공시성

실질비의 요건으로서 첫번째로 들 수 있는 요건은 비공시성의 요건이다. 특정한 사안이 성질상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미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에게 알려진 것이라면 그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110. D.M. Gill mor et al., Mass Communication Law, Cases and Comment, 5th ed. 1990

111. The NewYork Times, editorial "The Vietnam Documents" June 16,1971.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12. ibid.

113. 평권순, [한국언론법제론], 1993

114. W.Wilson, Congressional Government 88 f,(1885). 박용상 '정보보호법제' 에서 재인용

115. 박용상, '정보보호법제', 1995.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적 경험속에서 슬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비밀값지 않은 비밀을 발설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었었다. 이에 대하여 비록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에게 알리는 것은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은 과거 폭압적 정권하에서 정부에 불리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역사적 현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시성이 반드시 비밀의 기본 조건으로 충족되어야만 할 것이다.

② 필요성

국가비밀로 다루어지기 위하여는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보에 실질적 위협을 가져오거나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국민에게 보장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등 기능적으로 보아 비밀로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한다.따라서 광범위한 범주에 의해 막연하게 비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비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③ 허용성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논란되는 것은 보호대상인 비밀의 내용이 위헌 또는 위법한 경우에도 국가비밀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자체만 보면 비밀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무가 위법성을 띠는 경우에는 그것을 폭로하였다 하여 바로 그를 처벌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모든 내부자 고발이 처벌되고 공무원의 모든 부정과 비리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법 위법의 판단은 미묘한 경우가 보통이므로 중대한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아무나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공개하게 된다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복리를 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있고, 적절한 시정책을 구한 후에도 효과가 없었으며, 누설행위의 목적이 그 위법상태의 발생의 방지 내지 제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얼마전 감사원 직원이 감사보고서를 기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직무상 수비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기자에게 제공된 보고서는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함의가 있을 것이다116).

④ 형식비주의와 실질비주의

국가비밀을 정의함에는 형식상 이론과 실질비설과 형식비설(지정비설)이 대립한다. 실질비설은 이상과 같은 비밀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진 것이면 형식상의 비밀지정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비밀이라고 봄에 반하여, 형식비설은 실질적 요건에 무관하게 국가의 비밀지정 등 비밀로 하는 행위가 있고 비밀의 형식을 갖추어야 비밀이 된다. 실질비설은 이론적으로 충실하나 실재상 비밀의 구분과 한계가 모호한 반면,형식비설을 취하는 경우 비밀사항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비밀지정권자의 자의적 비밀지정경향 때문에 난점이 있다. 어느 설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정보 공개법은 9개 항목으로 비공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한 것을 스웨덴의 예처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공개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7.4.6.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와 전자민주주의의 쟁점 (김도연117))

■ PC통신의 공간개념에 대한 상반된 두가지 예:

116. 서울 高等法院 1994.4.27. 선고 91구 15869 파면처분취소사건. 동 사건에서 감사실시 후 23개 기업에 대한 과세누락된 비업무용 보유실태와 법령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은행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와의 대비를 통한 법인의 부동산투기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의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기자에게 제공한 감사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감사보고서 중 개별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하는 면이 없이 없으나 국가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점검하고 토지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공공적 토론이나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할 것이어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도 없으며, 위 보고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채 종결되어 감사자료로서 분류된 것이므로 미결의 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기록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비밀성을 부인하고 있다.

117. 서울대 신문학과 강사

- 지난 10월 29일, 411총선 무렵 "박00, 풀갑뿔고 있네"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 박도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 은행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평소 발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평가를 밝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여러 사람이 보는 컴퓨터통신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 10월 31일 서울경찰청은 "무장공비 이거 조금 황당하다" "그들이 무장공비일까"하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윤석진씨(27)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그밖의 PC통신상의 발언에 대한 처벌사례로는 지난 8월 한총련사태때 나우누리의 한총련 CUG와 id를 박탈한 경우가 다.(한국일보 1996년 11월 11일 25면에서)

■ CMC와 민주주의

- 국내의 경우 92년에 12만에 불과하던 PC통신 이용자가 급년 연말까지는 2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세기 말에는 전세계적으로 약 2억의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됨.

- CMC의 매체적 특징: 단말기로 PC이용, 디지털전송신호, 전송망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 Bertelsen에 의하면 인류사회에서 대표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식과 인류의 생활양식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즉, 구두언어시대, 문자시대, 그리고 전자커뮤니케이션시대에 인류의 문화양식, 정치행태는 각각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진다. 특히 구두언어시대의 참여민주주의의 낭만적 행태들이 전자커뮤니케이션시대의 민주주의의 발현(가능)형식과 여러면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 對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민주화. 전자가 확보되어야 후자가 가능?

-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McBride보고서에서의 정의)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커뮤니케이션의 단순한 객체(objects)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 그에 따라 사회내의 다양한 메시지가 상호교류되며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또는 대표의 정도와 질이 증가하는 것.

- 커뮤니케이션 민주화를 위한 제 조건 :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관계되는 시장영역을 통제하는 사람들에 의한 시장 검열과 의견의 공적 규정과 유통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되면, 정보 그 자체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공평한 액세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의 생성과정에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의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능력(competence)이 구비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려는 합리적인 욕구가 있어야 한다.

■ 커뮤니케이션 민주화에 적합한 CMC의 특징:

- 메스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일방적 정보수용자였던 사람들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메시지 생산 가공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연계된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 스스로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 물리적 공간에서는 인종과 문화, 거리 등의 제약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어렵던 이들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됨.

- 시장진입의 비용이 가장 저렴.

■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場으로서의 CMC의 성공사례 (Downing)

- PeaceNet 현재는 Institute of Global Communication산하의 5개 네트워크중 하나. 국제평화운동에 관여하던 민간단체들이 함께 출연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이 가진 데이터와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운영.

- Public Data Access (PDA)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의 Reduction of Paperwork Act 에 기본하여 성립된 민간 네트워크. 정부관련 데이터를 싼 값에 민간에 제공하며 이를 가공하여 여러곳으로 활용도를 높임.

■ CMC에서 커뮤니케이션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들

- Ithiel de Sola Pool은 뉴미디어가 비록 액세스가 용이하고 쌍방향적으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가졌지만 이것이 반드시 언론자유를 확장시킬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 측면에서 언론자유를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질 것이니까.

1) 회선제공업자, 서비스제공업자의 게이트키퍼화 (사업자들의 통신검열) 이들이 단순히 정보를 정보 제공업자로부터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중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업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개인간의 정보교환에 관여하여 직·간접적으로 정보유통을 규제하

고 있다. 예) 미국의 프로디지나 컴퓨서브에서 왜설적 언어를 스크린하는 프로그램으로 내용통제를 하다가 점차 그들의 사적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규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정보시장의 성숙에 따라 과거의 회선제공업자가 점차 서비스제공업이나 정보제공업에도 진출을 꾀하면서, 경쟁상대들의 액세스를 억제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할 가능성.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내 ID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순간부터 '네트워크 운영업자는 누가, 언제, 무슨 내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접속했는가'에 관한 정보를 누적, 집계할 수 있다.

2) 공적규제의 제도화
미국의 CDA(Communication Decency Act)법안의 입법화: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는 명분이나 이를 통해 언론자유가 축소될 가능성.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53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유통되는 메시지나 정보에 대한 사후 심의는 물론 사전검열도 가능하다.

3) 통신이용자들의 열악한 토론문화 익명성을 기초로한 저질 메시지들

7.4.7. 지역사회 전산망 운동을 통해서 본 정보민주주의 운동의 방향과 전략 (윤영민118)

■ 정보민주주의 운동의 목표

- 어떤 이념이나 형태를 취하든지 현대적 정보민주주의 운동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 중의 하나는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민주주의 운동은 전산망의 확산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지불능력이 없어 정보접근(information access)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전보사회의 시민권이 가져다주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정보사회라는 용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보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정보기술에 의존해 발생하는 사회를 면연히 지칭할 뿐이다.- 물론 현재 정보접근이 가능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혹은 앞으로 접근을 확보할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정보민주주의 운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정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캠페인 등.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보민주주의 운동이 거기에 머무르면 그것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운동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정보평등, 혹은 평등한 정보사회의 실현,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산망의 하향적 확산이 정보민주주의 운동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 참여민주주의 구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증대시킴.
-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축: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임.

■ 지역사회 전산망

- 이상의 세가지가 정보민주주의 운동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사회 전산망(community network)은 정보민주주의 운동의 중요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전산망에 대해서는 발표자가 책에서 상세하게 소개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요한 측면에 대해서만 간단히 일별한다.
- 지역사회 전산망이란?
지역사회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지역사회가 전자적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이 되는 중앙컴퓨터에 전화선을 통해 연결되는 모뎀을 가진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 인터넷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지금은 Dial-up 방식과 인터넷을 통한 접속을 모두 채택하는 지역사회 전산망이 늘고 있다.
- 지역사회 전산망의 세 가지 목표
1) 지역사회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community)의 활성화
2) 정보접근: 어떤 지역주민도 전산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 정보접근의 실현.
3) 개혁: 지역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 주민 개개인의 발전.
- 지역사회 전산망 운동의 중심조직은?
NPTN(National Public Telecommunication Network)이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톰 그룬드너(Tom Grundner) 교수가 이끌고 있음. 최초의 프리넷인 클리브랜드 프리넷의 추진자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했음. NPTN은 새로운 프리넷 설립을 지원, 프리넷 사이의 전자우편 서비스

스 제공, 정보화 프로그램 제공, 대 정부 로비나 대 지역사회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사회 전산망 운동의 주체는?

초기에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으나, 지방정부, 독립단체나 법인, 공공도서관 등 점차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영리조직들도 지역사회 전산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 지역사회 전산망들은 성공적인가?

NPTN의 지원을 받고 보통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다. 사실 무료로 접속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포트(port)의 부족으로 접속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증가의 의미에서 성공적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주민들의 전산망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아직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역사회 전산망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역시 재정문제이다. 어떤 조직이든 환경으로부터 각종 자원(활동가, 지지자, 재정,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운동과 달리 시설을 갖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정보민주주의 운동의 전략

지역사회 전산망 운동의 운영전략은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운동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것은 운동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함)도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재정문제 이상으로 심각하고 재정확보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정보민주주의 운동은 재정확보와 영역확보라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략적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비용의 최소화: 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은 재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지지자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 Charlotte's Web의 사례

- 자원봉사자의 참여
- PC를 이용한 Mini-Hub
- 교육용임을 인정받아 North Carolina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에 접속
- 일반전화선 28.8K를 두개 합쳐 56K multi-line을 만들어 운영

○ 연대와 협력: 전산망운동이 전망(vision)과 목표(goal)를 분명하게 갖는다면 유사한 목표를 갖는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나 조직과 적극적인 협력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전제는 목표와 활동범위를 선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가들 자신에겐도, 주민들에게도, 다른 단체, 기관, 기업들에게도 명백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활동가들이나 참여자들에게 방향감과 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다른 조직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전산망의 확산, 정보공유,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민주주의의 실현 등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전산망과 연대나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이 많다. 운동 단체들 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 Charlotte's Web의 사례

- 정부, 재단, 기업의 지원을 받고, 정부기관과도 적극 협력.

○ 재원(funding)의 개발:

지속적인 재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사회전산망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재원은 크게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를 소비하던 공급하던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얻는 개인 사용자나 단체 IP(Information Providers)를 직접사용자(direct user)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광고주들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얻는 재단, 정부기관, 기업들을 간접사용자(indirect user)라고 부른다.

* 잠재적 재원

직접사용자: 이용자(users), 회원(members), 단체참여자(organizational participants), 광고주(advertiser) 간접사용자: 재단(foundations), rldj(business), 정부(government), 공공재원조달(public funding) 사용자에 의한 재원조달 -- 기부 (donations) 미국에서 공영 TV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주로 의지하는 방법. 기부금 캠페인(funding drive)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호소하고 기부를 유도하는 방법. 만약 이 방법으로 충분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들의 기부금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없다. 설령한 시점에서 상당한 기금이 모금되었다더라도 그후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례) 캐나다 오타와의 The National Capital Free-Net은 사용자들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일주일에 3천불 이상을 규칙적으로 받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연간 11만불(캐나다 달러) 이상에 달한다. 자발적 기부금을 확보하는 다른 방법은 T-셔츠나 커피 잔과 같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상품을 파는 것, 저녁 파티, 경매, 세차 등의 다양한 기부금 확보 활동. 이들은 모두 미국 지역사회에서 단체활동을 위해 오래 이용되어온 익숙한 방법이다.

2) 사용자에 의한 재원조달 -- 서비스에 대한 지불(Paying for service)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원조달의 기회를 가져

다주는 반면 지역사회 전산망의 원래 동기로부터 이탈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서비스(fee-based service)를 이용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설명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비용을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다른 방안은 인터넷에 대한 SLIP 접속이나 FTP 기능을 제공하는 소위 "premium service"에 대해, 간 요금을 물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공동체를 두 계층으로 나누게 되고, 지역사회 전산망은 결국 무료로 "basic services"만 이용하는 사용자들보다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을 낳게 된다.

또한 서비스를 유료화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지역사회 전산망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으면, 그 전산망은 사람들의 눈에 상업 전산망으로 비치게 되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보다 높은 기대를 갖게 만든다. 예컨대 시스템이 다운되면, 상업 전산망 이용자들은 거칠게 항의하겠지만, 비상업적 전산망 이용자들은 실망은 하더라도 참아줄 것이다. 덧붙여 서비스를 유료화 하면, 사용량 모니터, 요금청구, 회계 등을 위한 직원들을 고용해야 한다. 미지불요금을 받는 것만도 커다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사회 전산망들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고 있다.

서비스의 유료화가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3) 회원에 의한 재정지원(support by members)

만약 지역사회 전산망 조직이 회비를 지불하는 회원제 조직(membership-based organization)이라면, 얼마간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회원과 비회원사유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지역사회 전산망은 서비스일 뿐 아니라 특정한 목표를 가진 조직(an advocacy organization)이다. 때문에 회원제 형태의 조직이 바람직하다.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전산망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원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어야 하는가?

사례) Buffalo Free-Net과 Seattle Community Network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4) 간접적 사용자들에 의한 재정지원

5) 지역사회 전산망에의 광고

6) 공공 재원조달(public funding)

지방세나 공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 통신, 컴퓨터, 미디어와 같은 정보고속도로 관련 기업들에게 이익금의 일부(세금의 형태로)를 비영리적인 지역사회 전산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도록 제도화 할 수도 있다.

*Charlotte's Web의 재정확보 전략

(1) small project grants

(2) 등록 사용자(registered users)에게 등록할 때 \$2-3 정도 donation 받음. 현재 4천명 정도 등록 사용자 확보

(3) 정부기관과 협력: 경찰서의 교통사고 기록을 D/B화하여 제공. 보험회사, 병원 등이 이 정보를 이용. 사용료(fee)를 받음. 연간 \$4만불 수입.

(4) corporate sponsorship

(5) 지방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 전자민주주의의 가치 부각.

(6) 작은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e-mail 서비스나 인터넷 계정을 제공하고 얼마간 fee를 받음.

(7) 상업활동은 절대로 하지 않음. 상업기관이나 상점에는 link만 제공하고 fee는 받지 않음. 가상공간을 팔지 않음. 광고를 게재하지 않음.

(8) 실비만을 받고 비영리단체나 정부기관에 교육, 훈련, 기술지원 제공.

■ 결론

지역사회 전산망(communitiy network)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communitiy)가 되어야 한다.

7.4.8. 정보화와 노동운동 (백영민119)

노동정보화사업단(준)의 1차 심포지움에서 전문적인 부분들과 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시각들을 많이 다뤘으므로 2차 심포지움의 본 기초발제문은 가능한 한 노동운동의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정보화 현실을 개괄적으로 진단해보고, 외국 노동

운동의 사례들을 함께 다뤄보며 장차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인문사회과학에서 출발하여 지난 십수년의 세월을 수공업적인 우리의 노동운동속에만 있었던 관계로 특히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개념과약에 있어 방만한 면이 있으며, 더구나 아직은 학술적으로 정립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정보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문맥이 우왕좌왕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

또한 이 기초발제문은 여전히 걸음마단계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정보화수준과 마찬가지로 그 깊이가 부족하므로 전문성을 갖는 각 패널들의 토론에서 많이 매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들어가는 글

작금의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에서 가장 즐겨쓰는 단어가 있다. 이른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말이다. 마치 김영삼정부에 의해 독창적으로 제기된 화두인양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용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사회의 섹터를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는 이미 80년대 미국사회가 기술진보를 위해 내걸었던 슬로건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을 주장하던 중심세력들이 다국적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옴모를 포장하기 위해서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국가간의 경쟁이라는 아이러니한 슬로건을 주창했었다. 그런데 이미 1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마치 이데올로기적 공세처럼 자본과 밀착된 의혹을 풍기며 회자되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표어처럼 남발되는 "국가경쟁력 강화"는 제벌에 대한 국가권력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자본의 노동 착취에 대한 노골적인 합리화선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국가"라는 단어를 동원함으로써 국민대중의 민족주의적 의기에 기대기도 하면서, 그리고 노동을 배제한 정치권력과 자본의 기술적 우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인식될 수도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물들에서 쉽게 발견하게 된 "정보화"라는 개념의 적확(的確)한 의미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목격한 바 있다. 특히 제국주의적 종속체계를 간수하면서도 외형적이나마 정보화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맞춰보겠다는 정부의 기술정책에 힘입어 우리는 속빈 강정처럼이나 일견 "정보화시대"라는 열차에 동승한 착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경과였다. 무서울 정도로 증가되는 컴퓨터 보급률과 각종 네트워크산업의 발달, 그리고 정보산업의 폭발적인 발전 등은 누가봐도 우리나라가 정보선진국에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세대가 컴퓨터와 정보기술이라는 블랙홀에 열광적으로 몰입하게 되고, 컴퓨터와는 거의 상관이 없었던 중장년세대는 그같은 정보화의 흐름을 경이와 공포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외자로 만들어버리곤 했다. 특히 경제적, 교육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속에 있던 노동자대중은 더더욱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빈익빈 부익부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풍처럼 이 사회의 저변을 뒤흔들고 있는 "정보화"라는 문제에 대해 보다 깊숙한 고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컴퓨터로부터 소외당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보화"라는 말이,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말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동안 전문적인 기술자들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사무관리적의 업무로만 여겨졌던, 그리고 전문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자본의 입장에 선 사람들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이 "정보화"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 노동계급에서도 보다 공세적인 자세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인 것이다.

■ 정보화와 노동운동

"오늘날 우리는 신기술의 경이로움과 마력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근대적 기술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믿도록 유도되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컴퓨터 혁명의 해방적 잠재력에 걸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의 경제적 운명은 기술적 풍요의 와중에서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 모든 산업국가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대해 왔던 풍요와 레저라는 <꿈>의 실현이 다름 아닌 바로 정보화 시대의 여명인 지금 왜 더욱 멀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해 하기 시작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신기술은 우리의 적이 될 수도, 동지가 될 수도 있다. 그같은 양면성은 신기술이 장단점을 함께 갖고 있다는 의미로도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보화라는 파고는 어떻게 소유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 사회발전의 중심축으로, 그리고 다중의 복리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익한 도구로 변화될 수 있으며, 때로는 집중화된 권력과 자본에 의해 대중들이 감시당하고 조종당하는 상황의 진행도구로도 그 악역을 대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보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여전히 자본과 노동의 첨예한 대립이 진행중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정보화는 어떤 경로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나라의 정보화 현황

일단 그 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표시하는 <정보화 지표>는 정보화 관련 설비와 정보 이용률, 정보화 투자 등을 종합한다. 1995년 한국전산원에서 발간한 <국가정보화백서>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지표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699, 일본은 490을 보이는 등 여전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설비 부문에서는 큰 격차가 없으나 정보화 투자 부문에서는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비교해 정보이용률에서 11배 이상의 큰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실" 정보를 소비, 활용하는 정보이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대단히 취약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보화 지표 중의 하나인 PC 보급률에서 볼 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증가율은 가히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시작된 것은 70년대 말이지만, 그 이후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이르러서는 지난 10년동안의 보급통계수치를 단 1년만에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 정보사회를 대비한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컴퓨터 마인드의 확산과 아울러 급격한 PC 보급률의 신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청년문화연구소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PC 보급률이 92년도에 37.6%였던 것이 95년도에 이르러서는 60.8%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PC 보급률의 고속 신장의 이면에 연령별, 직업별, 업무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각종 통계에서 학생층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층의 보급신장률을 주로 보여주고 있듯이 중장년층은 여전히 컴퓨터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사무, 전산직에 편중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과 제조업 중심의 블루칼라 노동자들간에도 천지차이의 PC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기술여야 하는 것은 단순한 보급률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마인드와 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노동계급과 중장년층이 소외의 심화라는 악순환원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경제,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 소외되어온 계층에 대한 배려 내지는 재교육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 사회"를 부르짖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이같은 재교육 프로그램은 배치하지도 않은 채 공허한 슬로건으로서의 정보화만을 외침으로써 계급적인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매킨컴을 동원한 일방적인 정보화 개념의 주입은 외려 무질서한 정보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수의 대중에게는 더 큰 패배감과 무력감만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지표는 단순한 통계 수치 이하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우리나라 노동진영의 정보화 현실

노동과 정보화. 이같은 주제가 노동진영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몇 년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정보화라는 개념이 노동문제와 깊숙히 관련있음을 간파한 인사들도 수적으로 적었을 뿐 아니라, 그같은 정보화라는 용어를 적용시키기에 우리의 노동현실이 너무도 가파르고 척박한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대중조직에 의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된 것도 70년대 들어서부터이고, 권력과 자본의 일방적인 독주속에 우리의 노동운동은 자연 투쟁적인 분위기로만 일관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눈동으로만 인식되어온 우리 사회인식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 자체도 제조업에 그 중심을 놓는 현장조직의 투쟁으로만 일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조건은 "정보화"라는 고급 용어에서 노동운동이 비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고, 그나마 일부 전문업종의 문제제기도 급박한 노동사회현실의 투쟁론에 일방적으로 파묻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현장조직들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특히 노동운동진영에서 <정보화와 노동조건 변화>라는 테마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정보화 논쟁이 시작되었다.

작업장체제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노동통제의 강화 등이 80년대 중반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밀려오는 구체적인 현실들이다. 과학기술혁명론과 ME(Micro Electronics) 혁명론 등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치열하게 논의되는 테마들에서 이같은 구체적인 현실들을 여러번 살펴보았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면서도 노동문제에 관한 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좀더 저급한 수준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할지 모른다.

여전히 현장 조직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은 고사하고 전산화설비조차 미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필자가 구체적인 통계자료에 접근하지 못한 관계로 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 중에서 대기업노조와 전문업종소속을 제외한, 특히 대다수 중소 제조업체 노조들의 경우는 PC를 제대로 구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PC를 구비한 곳마저도 전산담당자의 부재로 제대로 활용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대기업노조를 논외로 한다면 그 활용의 수준마저 기껏해야 문서편집이나 문서의 송수신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조합조직의 정보화 수준으로 말한다면 중간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는 형편이다. 하드웨어적인 설비의 부족은 그렇다치더라도 노동운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수준 역시 우리는 걸음마에 불과하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과 더불어 현장조직들이 활용할 적당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노동운동과 정보화의 전격적인 결함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열악한 정보화 수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특히 이른바 고학력,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 전산정보관련 전문직 종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계급성을 깨닫지 못한 채 제벌과 권력의 테마에 함몰되어 노동계급에 자신의 전문성을 투여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또한 그들의 업무특성상 개별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그 개별적인 인적 자원들을 조직으로 포괄해내지 못하는 우리 노동운동진영의 능력 부재 또한 노동운동과 정보화의 결합력을 상송시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직종의 고숙련 노동자들도 일부의 주장과 같이 탈속련화를 겪게 되거나, 또는 고숙련을 요구받는 수준에 비해 특권의 상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장차 전체 노동운동진영에 포괄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가 하나 추가된다. 바로 정보노동자들의 조직화 내지는 조직내로의 포괄이 그것이다. 역시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것처럼 척박한 현실속에서 비록 조직의 상층부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각 산하조직들을 컴퓨터통신망 속에서 일관성있게 묶어보려는 시도들이 도처에서 보여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근 나우누리에 CUG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개설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으며, 각 통신망에 개설된 노동현장조직들의 CUG나 자체 게시판이 이미 1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 아직은 이들 조직들도 내부의 문건 하달이나 소식 전달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화에 관한 사회과학적 사고를 가진 담당자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대략 기본적인 기술적 지식에 의존하여 게시판을 운영하는 형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산하조직을 거느린 상급조직의 경우는 전국에 산재한 산하조직들이 그 정도의 게시판 운영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정보마인드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 조직의 상층부는 부족하나마 정보화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치더라도, 노동운동의 핵심주체인 조합원대중은 절대다수가 또다시 소외당하고 있다. 정보 마인드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과제는 아직도 그 해결이 요원하기만 하다.

3) 외국의 노동정보화 사례와 그 전망

우리나라와는 많은 조건의 차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노동운동의 정보화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각도의 해결책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여러번 다뤄졌던 캐나다 공공노조(CUPE)의 SOLINET을 위시한 인터넷상에서의 노동단체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고민하는 노동정보화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캐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86년, 캐나다 공공노조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조합원 교육을 위해 SOLINET을 개발했다. 마크 벨랑거(Marc Belanger)에 의해 주도된 솔리넷 사업은 이후 전세계 노동운동의 정보화사례로 그 모델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캐나다 공공노조는 캐나다 전국에 산재한 2,200개 지역의 400만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같은 대형노조의 조건이 현실적인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결론내린 것이 바로 컴퓨터 통신망이었다. 그들 조직으로서의 전국적인 대의원의 조차 시간과 공간적 제약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으며, 더구나 노동조합조직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인 조합원대중에 대한 교육을 일관성있게 진행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다. 결국 자금 확보 등의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독자적인 통신망 시스템을 개발,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조직운영의 난제로만 안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밀도있는 조합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 방송 매체에서 소홀히 취급되던 마련인 노동관련 뉴스들을 집중시킨 주간노동뉴스를 각 회원들에게 공급하게 되었고, 특히나 민감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즉각적인 토론을 게시판상에서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전국을 망라하는 산하 지부조직원들에게 신속한 교육적 효과를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PSI(Public Service International)의 World Congress에서 POPTEL의 대표가 세계 각처에서 모인 지부 대표들에게 노동전자통신의 원칙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 솔리넷의 성격과 장점을 명확히 밝혀주지 않나 생각된다.

"미래 노동자 교육에서 차지할 컴퓨터 통신의 역할을 살펴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한 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일상활동에 대한 조절능력을 갖게 되고 개인교육계획을 보다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우편(E-MAIL)이 교육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컴퓨터화된 투표는 표준서식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진보된 위치에 있는 교육관리자가 자신의 교육계획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시에 PSI에 전자우편을 통해 서식화된 보고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다른 이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주제에 관련하여 세계 도처의 학습자들을 연결하는 전지구적 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전지구적인 전문지식은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 전지구적인 교실, 또는 토론 시스템은 현재에도 존재한다. 바로 캐나다 공공노조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솔리넷이 바로 그것이다."

*** LTC(the Labour Telematics Centre, 노동정보통신센터)**

LTC는 노동운동조직들이 정보통신과 정보 기술에 기초한 컴퓨터로부터 이점을 얻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LTC가 주력하는 사업은 전자통신의 사용을 매개로 한 가능한 조직단위의 학습과 통신 실습, 전자통신 훈련과 관련 프로그램 사용훈련, 각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조직의 훈련 교재 생산,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조직을 위한 온라인 정보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노조의 문건과 신문의 전자출판, 각 조직에 대한 기술적 자문, 각종 세미나와 회의 조직, 통신과 관련한 연구, 출판, 가이드북 제작 등이다.

***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1990년, 제조업 노조와 노동자 조직들에게 출판서비스와 기술적 자문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해 모스크바에 노동정보센터인 KAS-KOR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러시아 통신시스템의 낙후와 재정적 부족,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의 정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덕분에 KAS-KOR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외국의 자료를 번역하는 것이다. 한편 KAS-KOR은 노조연맹의 지원하에 노조단위에 전자통신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현대 통신'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 국내 제조업 노조통신 네트워크, 예를 들면 석탄산업과 같은 특정산업 노조의 서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계획은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지적, 교육적, 그리고 정보영역의 차원에서 서구 각국 노조조직들의 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이밖에도 항공운송노조들을 전세계적으로 포괄하며 효과적인 노조연대투쟁을 이끌어내는 ITF(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의 통신시스템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들이 막대한 분량의 법률 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and General Workers' Union> 등이 우리 노동진영이 주목할만한 대상들이다.

■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노동운동진영의 대응 자세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혁명이 장미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혁명적 사회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히 파괴적이라고 할만치 가해오면서 모든 생활방식에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적인 이론으로만 생각되던 정보화에 의한 실업의 증가와 작업장체계 및 각종 노동조건에 급격한 변화가 이제는 현실로 체감되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태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정보화에 의한 각종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먼저 노동자에 의한 노동과정의 통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자동화로 인해 작업장에서 허드렛일로 쫓겨난, 그리고 아예 노동현장을 송두리째 빼앗겨 실업상태로까지 전락한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부에만 국한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세계적으로 볼 때는 특히 선진국들에게서는 이미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더구나 로보틱스와 인공지능기술의 응용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의 탈속련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노동과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다. 이는 노동자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조직의 결성을 더욱 힘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동과정의 통제가 사용자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질 때 노동은 이미 유향적인 성격을 포기하고 노예의 노동으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

"문명 새로운 기술은 인간을 지루하고 위험한 작업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인간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고, 노동과 삶의 향유가 일치할 가능성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조직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이 철폐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노동자는 작업현장의 감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가 설계과정에서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설계과정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정과 목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힘없는 참여란 있을 수 없다!" CPSRI(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모임) 버클리 지부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모임(Peace and Justice Working Group)에서 펴낸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대한 강령> 중에서

그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이다.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으로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각종 실업의 적실한 해소를 위해 실업수당의 확충 및 재교육을 통한 실업노동자들의 현장복귀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노동자들의 현장조직력에 의해 예상되는 실업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장래 그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요구와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이는 노동조합조직들 스스로가 조합원대중을 교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체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국가나 기업에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조직들은 현실적 문제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진영의 현실은 그같은 기본적인 요구조건마저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악한 노동진영의 정보화 현실이 너무도 열악한 때문이다. 그러나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기야 한다. 세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정보노동자라 일컬어지는 고숙련, 고학력, 고임금 노동자들을 노동조직으로 포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차별이 유별나게 강했던 우리 사회인식은 지금까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으며, 현장 조직활동가들에게도 그들을 일정 정도 포기한 상태에서 바라보게끔 만들었다. 아울러 화이트칼라 노동자 당사자들 역시 스스로 노동자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는 반노동자적 자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석박사로 이뤄진 노조가 출현하는가 하면, 자신의 현장조직은 아니더라도 각종 노동단체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지금이 그들 고숙련 노동자들을 전체 노동진영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직하고 활용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결국 노동운동의 정보화 자체도 그들 고숙련 노동자들의 지적 노하우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 진행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발제문에서는 지나친 내용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정도로 줄이고자 한다.

■ 맺는 글

재벌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출연연구소의 노동관련 데이터베이스작업, 그리고 경총의 업무부서 활동 등을 목격하고 다 시금 우리 노동진영의 작업들을 돌아볼라치면 새삼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급두뇌들을 활용하는,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 정보를 손쉽게 장악하는 자본의 힘은 과연 난공불락인가? 노동운동진영은 스스로에게 필수적인 노동관계의 집대성작업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한 반면, 자본측은 노동통제를 위한 여러 작업 중의 일환으로 이미 분류표준까지 완성된 틀거리를 갖고 노동관계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실전에서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정보화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만일 자본과 노동을 적대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본다면 이미 무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정보화라는 흐름은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뒤처져 출발하는 우리 노동진영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 것일까. 바로 이 점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본 발제문의 맺음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진영은 정보화라는 개념에 대해 대단히 수동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노동현장에서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선에서 만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사회적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아울러 노동대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토론의 시스템을 만들어가 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들은 대개 관료적인 성격과 관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직운동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기업노조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선진적인 노동자들과 조합간부층으로 국한된 깊이있는 교육과 토론체계 등이 조직대중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운영이 대부분이었다. 대개의 경우 조직대중은 상층부의 선진적인 지침에 만족해야만 했고, 조직의 상층부와 간부들은 대중의 자발성 부족을 한탄해야만 했다. 그러나 실제 조직운동을 책임맡은 활동가들은 사업의 배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이나 선전 사업이 지나치게 왜소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보다 강화된 교육, 선전 작업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조직대중을 결속하기 위해,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노동진영에서 최소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조직들과 각 노동단체 조직들은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노동정보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건설과 그에 요구되는 자금과 전문기술력의 확보 역시 먼 미래가 아닌 바로 당장부터 시작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노동정보화사업에는 앞서 말한 노동대중을 위한 교육, 선전 사업의 통합적 배치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필수적인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표준을 설정하여 풍부하게 구축, 제공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필요조건들 외에도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노동대중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조직들이 정보화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 각종 사회적 제도의 보강과 설립에 대한 정치적인 선전과 요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노동은 자본과 정치권력이 주도하는 정보화를 대중의 정보화로, 그리고 정보의 민주화로 이끌어내야 할 역사적인 과제를 안게 되었다.

7.5. 통신인 구속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통신연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서울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무장공비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글을 통신상에 올려 복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윤석진, 신승우씨를 10월 31일 구속하고 조덕진, 이인홍씨를 연행했다. 더군다나 이번사건의 수사대상자가 33인에 이르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는 글쓴이의 진의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내용만을 발췌하여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여론재판에 한몫 거두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에 의해 자행되어온 통신검열 및 통신인 구속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선거기간중에 특정후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통신공간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유죄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한총련 CUG를 타당한 근거없이 폐쇄하였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또 하나의 통신인 구속 사태를 접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공간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곳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곳은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선동공간도 아니며 어느 개인의 소유도 아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정보들과 의견들이 넘쳐나며, 한 의견과 그에 대한 반론, 토론들이 항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판과 토론이 가능한 통신공간에서의 의견개진을 선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통신공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검열과 맥을 같이하는 이번 구속사건은 정부가 통신공간에서의 민주적인 토론과 기본적인 통신권리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들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전근대적인 처사이며 '정보사회'라는 화려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신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한 예이다.

1996년 10월,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5대 목표'중 4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로 그 내용은 '정보민주주의에서는 열려있는 전자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보통신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정부는 과연 그러한 '정보민주주의'를 실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모습만으로 우리는 '열려있는 전자공간'이 아닌, 가장 '폐쇄적인 전자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21세기를 앞두고,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와 정보화사회라는 거창한 얘기들과는 반대로 실제 통신공간에서는 정부에 의한 검열과 통신인 구속이란, 시대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알권리, 프라이버시등과 같은, 우리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강제적 수단으로 억압하는 '검열'은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국가에 의한 통신검열과 구속사태들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에 구속된 윤석진, 신승우씨의 석방과 통신인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스스로가 천명한 '국민의 알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열려있는 전자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정보통신상의 모든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라.
3. 정부는 통신인들에 대한 폭력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1996년 11월21일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노동연구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정책이론연구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시민사회 인터넷, 시민환경정보센터, 얼터너티브, 음비법 대책 회의, 전국가톨릭대학생 연합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 연대SING, 지식인 연대, 진청이네, 찬우물, 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터, 통신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한국통신노동조합,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KSDN(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한국 본부) [가나다 순]